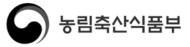
11-1543000-003098-01

#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구축 기초조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 출 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구축 기초조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연 구 기 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상 효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이 욱 직(연 구 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요약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주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구축 기초조사』(2020) 연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식품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들이 부처 내에서도 주무과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양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들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사업들의 통합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으로 진행될 후속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통합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대상을 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3) 정부양곡할인사업, 4)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5)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6) 보건복지부의 식품지원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개별 프로그램의 사업 시작 단계에서의 사업계획서부터 사업 추진 실적, 추진 현황, 정책보고서 등을 정리함으로써 개별 프로그램 간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였고,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현황, 타부처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현황, 미국의 식품제원제도,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과제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후속 과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정확한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식품 지원프로그램 외의 타부처의 프로그램은 자료 협조가 부족하여 후속과제에서는 행정조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중복성의 판단을 기획재정부 및 미국 회계감사원의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복수의 서로 다른 재정사업이 사업목표·사업내용·지원대상을 기준으로 2개 이상 유사·중복성이 있으면 해당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판단하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차례

제1성 시논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 내용 및 방법	2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현황	
1.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0
3. 정부양곡할인 사업	22
4.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8
5.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33
6.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종합	39
제3장 타 부처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현황	
1. 보건복지부	41
제4장 미국의 식품지원제도	
1. 미국의 식품지원제도의 필요성: 미국의 기아(Hunge	r) 문제 ······71
2. 미국 식품지원제도 현황 ·····	
3. 미국 개별 식품지원제도	
제5장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과제	
1. 법률 및 제도 기반	101
2 유사·중보성의 파다	

# 부록

2. 기존 제도와의 관계13년	
	2. 기존 제도와의 관계139

# 표 차례

TJ	OI
ᄱ	Z

	〈표 2-1〉 취약계층의 영양 및 식생활 현황 ······	9
	〈표 2-2〉 식품류별 바우처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정도 평가	10
	〈표 2-3〉 지원 대상 <del>품목</del> 의 적절성 평가 ······	10
	〈표 2-4〉 가구원 수별 지급금액	11
	〈표 2-5〉 소득 수준별 기준	12
	〈표 2-6〉 지역 유형별 가구수	13
	〈표 2-7〉 지역 유형별 가구수 평균	13
	〈표 2-8〉 정부양곡할인사업 지원 단가	23
	〈표 2-9〉 2019년 복지용 쌀 공급 현황	24
	〈표 2-10〉성과지표 ·····	32
	〈표 2-1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34
	〈표 2-12〉학교우유 급식률('18) ·····	35
	〈표 2-13〉학교 <del>우유급</del> 식 성과지표 ····································	36
	〈표 2-14〉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비교 ·····	39
저	3장	
	〈표 3-1〉 2020년 기준중위소득 ·····	42
	〈표 3-2〉 2020년 수급자 기준	42
	〈표 3-3〉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	45
	〈표 3-4〉 긴급복지지원 지원 내역	47
	〈표 3-5〉 생계지원 지원금액	48
	〈표 3-6〉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	53
	〈표 3-7〉 시도별 아동급식지원 예산 및 단가	54
	〈표 3-8〉 16개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	56
	〈표 3-9〉 16개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 예산 ······	57

	〈표 3-10〉 16개 광역시·도별 인건비 지원 현황 ······	58
	〈표 3-11〉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61
	〈표 3-12〉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65
	〈표 3-13〉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비 예산 및 집행액(국비)	65
	〈표 3-14〉 건강간식 종류 및 대상별 1회 배식분량	67
	〈표 3-15〉 운영 형태별 사업장 수	69
	〈표 3-16〉 지역별 사업장 수 ·····	69
	〈표 3-17〉 운영 주체별 사업장 수	69
	〈표 3-18〉 연도별 운영실적 통계	69
	〈표 3-19〉 연도별 운영실적 통계2	70
J	테4장	
	〈표 4-1〉미국 식품지원제도 개관 ·····	74
	〈표 4-2〉 SNAP 연도별 예산 ·····	75
	〈표 4-3〉 SNAP 수혜금액 결정 예시 ······	76
	〈표 4-4〉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의 구매 가능 식품	77
	〈표 4-5〉 WIC 연도별 예산 ·····	79
	〈표 4-6〉 NSLP 연도별 예산 ·····	82
	〈표 4-7〉 NSLP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	83
	〈표 4-8〉 SBP 예산 사용 현황 ······	83
	〈표 4-9〉SBP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	84
	〈표 4-10〉 연도별 특별우유프로그램 제공량과 지원액	85
	〈표 4-11〉 연도별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 식사 제공 수와 지원액	86
	〈표 4-12〉 2020년 주별 FFVP 할당액 ······	90
	〈표 4-13〉 연도별 TEFAP 제공량과 지원액 ·····	95

# 제5장

	〈표 5-1〉 유사·중복성의 판단 ······	103
	〈표 5-2〉 우리나라 식품지원제도	104
	〈표 5-3〉 개별 식품지원제도의 사업목표	104
	〈표 5-4〉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105
	〈표 5-5〉 유사·중복성 평가 ·····	106
	〈표 5-6〉 식품관련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107
누	부록	
	〈부표 1-1〉 SNAP 혜택을 받기 위한 총소득 및 순소득 기준 ······	110
	〈부표 1-2〉 가구원수별 최대지원금액(MA) ······	112
	〈부표 1-3〉 SNAP 참여율(FY2010-FY2016) ······	118
	〈부표 1-4〉 SNAP 지원규모 및 비용(2019년 7월 5일 기준) ······	119
	〈부표 1-5〉 TEFAP 연간 예산 ·····	127
	〈부표 1-6〉 WIC 월 최대 식품 지원량(아동, 여성) ···································	
	〈부표 1-7〉 WIC 월 최대 식품 지원량(영아) ······	133
	〈부표 1-8〉 WIC 월 평균 참여인원 및 운영비용 ······	134
	〈부표 1-9〉 WIC-FMNP 월 평균 참여인원 및 운영비용 ······	136
	〈부표 2-1〉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비교 ·····	139
	〈부표 2-2〉 기타 임산부 대상 지원사업 비교	140
	〈부표 2-3〉영양플러스 사업 비교 ·····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그림 차례

## 제2장

〈그림 2-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그림 2-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진체계19
〈그림 2-3〉	기관별 역할21
〈그림 2-4〉	정부양곡 공급 체계25
〈그림 2-5〉	신선편이 과일제품의 사례29
〈그림 2-6〉	과일간식 공급 체계30
〈그림 2-7〉	우유급식 공급 체계
제3장	
〈그림 3-1〉	업무처리 프로세스
〈그림 3-2〉	긴급지원체계 50
〈그림 3-3〉	긴급지원의 절차51
〈그림 3-4〉	시·도별 등록 대상자 현황63
〈그림 3-5〉	보충식품의 종류64
〈그림 3-6〉	푸드뱅크 사업추진체계68
제4장	
〈그림 4-1〉	미국의 식품 불안정 상태72
〈그림 4-2〉	연도별 SNAP-Ed 예산(FY1992-FY2020)78
〈그림 4-3〉	연도별 월평균 WIC 지원대상자 수80
〈그림 4-4〉	연도별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 시설별 식사 제공 수87
〈그림 4-5〉	TEFAP에서 활용 가능한 USDA Foods(2020년 기준)94

# 제5장

	〈그림 5-1〉 농식품 지원제도 관련 부처 및 법류1	
	〈그림 5-2〉 소득수준별 수혜가능한 식품지원제도 개수 분포	08
Ŧ	부록	
	〈부도 1-1〉 SNAP 바우처 사용처 현황 ···································	15
	〈부도 1-2〉 파머스 마켓/직거래 농업인 수 및 바우처 사용액	15
	〈부도 1-3〉 SNAP 바우처 사용처 현황1	16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연구의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식품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 사업들이 부처 내에서도 주무과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2020년 시범사업 추진), 정부양곡지원(식량정책과), 학교우유급식(축산경영과),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원 예경영과,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친환경농업 과, 2020년 시범사업 추진)
- 다양한 농식품 지원사업의 영양개선 효과, 농산물 소비 및 수요기반 마련 등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간 효율적 연계가 요구되는 반면, 개별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개별 사업들의 당초 사업목적 달성 및 개별 사업들의 고유한 특징 및 장점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함.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개별 사업들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과 통합적인 연계를 통해 올바른 영양섭취 및 건강 식생활을 장려한다는 관점에서도 영양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들 간 연계 및 통합을 검토할필요가 있음. 우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양섭취, 식생활, 건강 지원 관련 유사 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내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과의 부처 간 통합적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임.

#### 1.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및 타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영양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들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사업들의 통합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으로 진행될 후속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함.

# 2. 연구 범위, 내용 및 방법

### 2.1. 연구 범위

- O 이 연구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영양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지원사업들도 검토함.
  -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 지원', '정부양곡지원', '학교우유급 식',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급식지원', '노인급식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 유 지원', '영양플러스', '건강과일바구니', '푸드뱅크' 사업 등이 있음.

#### 2.2. 연구 내용

-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영양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 기초사항 조사
- 개별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 및 지원 대상
- O 개별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 지원금액 및 사업추진체계
- O 지원 법적 근거
- O 분석 내용
  - 사업간 비교분석 및 품목/지원대상자 측면에서 중복성 검토
- □ 검토 대상 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성/가능성 진단
- O '식품지워프로그램(가칭)'으로 통합 운영 필요성 진단
  - 통합 운영 필요성 검토
  - 사업간 중복성 진단
- '식품지원프로그램(가칭)'으로 통합 운영 가능성 및 예상되는 장애요인 진단
- □ 타 부처 식품지원사업(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및 미국 사례 검토
- O 타 부처 식품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 취약계층에 대한 바른 식생활 유도를 위한 식생활교육과의 연계(교육 대상, 방법, 컨텐츠 등)
- O 미국 식품지원사업 운영 실태 검토

## 2.3. 연구 방법

- 문헌 연구(사업계획서, 사업실적보고서, 정책 보고서 등)
- 농식품부 통합운영 작업반 T/F와 협조(사업 간 연계 가능성 검토)
- O 전문가 자문회의
- 해외사례 조사

#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3.1. 기대효과

○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제도의 개별 사업들을 기초조사하고,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통합운영이 필요한 경우 통합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추진될 연구과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개별 농식품 지원사업 간의 연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 3.2. 활용방안

- 개별 농식품 지원사업들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사업들의 통합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에 기초자료로써 활용함.
- 중장기 식품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현황

# 1.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 1.1. 추진 배경

-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지원을 위해 연간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상당수 영양소 섭취가 권장섭취량의 50~80%대로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며, 식품소비 불안정성 및 비만 증가세
  - 취약계층 실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들의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의 60% 수준이며, 이는 최저식품비의 약 70% 수준(15)
-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
  - (미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충적 영양지원프로그램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전자카드 발급하여 농식품 구매지원)을 운영
  - 1달러의 농식품 지워(특별영양보충지워): 약 1.77~3.13달러의 의료비용 절감효과

#### 1.2. 추진 목적

-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균형잡힌 농식품을 공급받아 대상 취약계층의 영 양 섭취 수준과 건강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취약계층의 식품 지출수준, 영양섭취실태 및 식품안정성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식품 접근성 개선과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영양보충적 지원 필요
  - (식품지출) 중위소득 30% 미만의 식품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의 83.6% 수준
  - (영양섭취) 중위소득 30% 미만 중 절반 정도가 칼슘,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나이아 신, 비타민 C가 크게 부족
  - (식생활) 식품안정성은 중위소득 50% 이상이 94.6%인 반면, 30% 미만은 74.9%로 낮음.
- 국내산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국내 농 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선순화체계 구축
  - 중장기 농식품 수급계획 및 푸드플래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
-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1.3. 지원 대상(잠정)

○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식료품 지출액, 식생활 불안정 가구 비중, 주관적 건강상태, 저작불편, 삶의 질 측면에서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가 가장 취약함. 한편, 영양섭취 부족자비중이나 권장량 대비 에너지 섭취 비중의 경우 중위소득 30~50%인 가구가 오히려 중위소득 30% 미만(비수급자) 가구보다 다소 취약함. 따라서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 뿐아니라 30~50%인 가구 또한 식생활 및 영양 측면에서 관심이 필요한 집단임(표 2-1).

-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최대의 식품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를 중심으로 식품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중위소득 30~40% 미 만. 3) 중위소득 40~50% 가구 또한 식품소비. 식생활. 영양/건강 차워에서 정책적 관심 이 필요한 대상이므로 향후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소득은 중위소득 30% 미만이지만 자산이 충분한 가구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자산 조건 적용을 검토할 필요 상존

#### 표 2-1 취약계층의 영양 및 식생활 현황

단위: 원/월, %

구분	전체	중위소득 30% 미만/ 수급자	중위소득 30% 미만/ 비수급자	중위소득 30~40%	중위소득 40~50%	중위소득 50% 이상
식료품 및 비주류+주류+외식비	370,291 (100.0)	204,819 (55.3)	223,137 (60.3)	253,770 (68.5)	294,272 (79.5)	420,902 (113.7)
식생활 불안정 비중	4.1	32.3	10.1	9.2	7.4	2.0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8.2	19.2	8.0	11.9	9.5	7.2
에너지(ERR 대비 %)	99.7	86.6	93.3	90.5	96.5	101.7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13.9	35.4	26.6	23.2	17.1	11.3
저작불편	20.3	41.8	40.2	33.8	28.7	16.5
EQ-5D	0.95	0.82	0.88	0.90	0.93	0.96

주: EQ-5D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 된 기기임.

#### 1.4. 지원 품목(잠정)

○ 취약계층 및 지자체·기관 담당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지원 금액이 동일하다 고 할 때 구매지원이 필요한 식품류로 쌀, 과일, 육류, 어패류, 채소, 우유·유제품·계란 등의 신선식품을 우선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빵·과자류, 장류·조미식품 등 가공식품 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평가함(표 2-2).1)

자료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sup>2)</sup>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6년도 원자료 통합분석.

<sup>1)</sup>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p. 177.

표 2-2 식품류별 바우처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정도 평가

구분	쌀	채소류	과일류	육류	어패류	유제품· 계란	잡곡류	곡물 가공품	빵· 과자류	장류· 조미식품
취약계층	4.39	4.16	4.22	4.39	4.07	4.11	4.01	3.71	3.36	3.63
지자체	3.43	3.28	3.38	3.60	3.37	3.36	3.09	3.20	3.00	3.01
기관	3.80	3.67	3.76	3.86	3.57	3.78	3.42	3.32	2.87	3.07

주: 5점 척도 기준.

자료: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177).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시 어떤 식품을 대상 식품에 포함시킬 것인가는 취약계층에서 부족한 영양소, 식품소비 패턴, 취약계층의 선호도, 국내산 공급여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식품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함. 취약계층 부족 영양소 실태를 바탕으로 다소비식품과 취약계층의 바우처 지원 선호 품목 조사결과 등을 반영할 경우 쌀,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잡곡, 계란 등의 신선식품이 대상 품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표 2-3⟩.

표 2-3 지원 대상 품목의 적절성 평가

구분	필요 영양소	다소비 식품	취약층 선호도	국내산 공급	물량대비 단가	섭취 편리성	타제도 비중 <del>복</del> 성	점수
쌀	0	0	0	0	0	0	Δ	17
채소	0	0	0	0	0	Δ	0	18
과일	0	0	0	0	0	0	0	18
우유	0	0	0	0	0	0	Δ	18
잡곡	0	0	0	Δ	0	Δ	0	16
계란	0	0	0	0	0	Δ	0	19
육류	0	0	0	Δ	Δ	Δ	0	15
가공/즉석식품	0	Δ	Δ	Δ	Δ	0	0	12

주: ◎ 매우 적절(3점), ○ 적절(2점), △ 부적절(1점)

자료: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윤·한정훈(2019: 162)의 일부를 수정.

○ 대상 품목으로서의 적절성 평가를 토대로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잠정) 선정함.

#### 1.5. 지원 금액

O 1인 1개월 기준 4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원수별 지급 금액은 OECD 균등화지

수름 이용하여 산출 가능함. 가구워 수별 지급 금액은 어떠한 균등화지수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함. 균등화지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시 적용한 균 등화 지수를 적용하거나. 가구워수의 제곱근을 고려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함(표 2-4).

#### 표 2-4 가구원 수별 지급금액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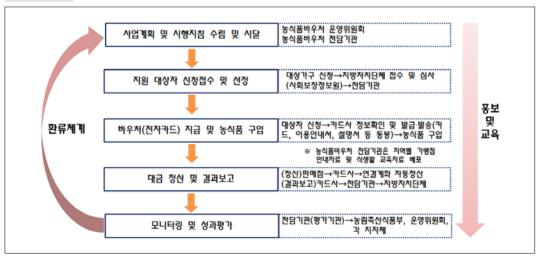
OECD지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생계급여	균등화지수	0.37	0.63	0.81	1.00	1.18	1.37	1.55	1.74
방식	4만원 기준	4만원	6만8천원	8만8천원	10만8천원	12만8천원	14만8천원	16만8천원	18만8천원
제곱근고려	균등화지수	1.0	1.41	1.73	2.00	2.24	2.45	2.65	2.83
방식	4만원 기준	4만원	5만7천원	6만9천원	8만원	9만원	9만8천원	10만6천원	11만3천원

자료: 직접 작성

#### 1.6.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단계,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단 계, 바우처(전자카드) 지급 및 농식품 구입 단계, 대금 정산 및 결과보고 단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환류체계 단계로 구성할 수 있음〈그림 2-1〉.

그림 2-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김상효 외(2019)

#### 1.7. 2020년 시범사업 계획 및 예산

○ 지원대상: 지자체 6개소에 중위소득 50%이하(적용 후 소득수준별 분석)

표 2-5 소득 수준별 기준

구 분 (평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재산소득 86만원/월 이하) 182만 가구(288만명)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4%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30%이하		65세 이상		65세 이상	
(재산소득 51만원/월 이하)			생계급여(식품비, 피복비, 통신비 등) 80만 가구(126만명)		
108만 가구(167만명)		5세 이하	332 11(12323)	5세 이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O 소득수준별(안): ① 중위소득 50%이하(수급자 제외, 당초 복지부 협의안), ② 30%이하 (비수급자), ③ 30%이하(수급자), ④ 30%이하(노인, 아동)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지역별(안):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3가지 지역유형으로 구분
  - 지역 유형별 취약계층 대상 수, 시장 접근성, 환경에 따른 필요 식품 등을 고려
  - 또한, 시장 접근성, 환경 등이 다른 유형별 비교집단 설정(총 6개소)
  - ➡ 3가지 지역유형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총 6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
- 지원금액: 4만 원 = 최저식품비(24만 원) 사용가능 식품비(20만 원)
  - 가구원별은 OECD균등화지수 적용 차등

- O 대상 지역: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3가지 유형
  - 지역 유형별 취약계층 인구수, 시장 접근성, 환경에 따른 필요 식품 등을 고려
  - 또한, 시장 접근성, 화경 등이 다른 유형별 비교집단을 설정(총 6개소)
  -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3가지 지역 유형별 지원대상은 평균 18.000가구이며. 각 시군구별 편차(10배 이상)는 고려할 사항〈표 2-6〉

#### 표 2-6 지역 유형별 가구수

단위: 가구

구분 (229 /	구분 (229 시군구)		도농복합형 (77개 시)	도시형 (70개 구)
500/ OI=1	평균	498	2,145	2,625
50% 이하 수급자 제외	최저	59	160	730
	최고	1,633	6,505	5,749
000/ 01=1	평균	1,372	5,157	6,273
30% 이하 (수급자)	최저	150	200	1,494
(164)	최고	4,660	15,061	14,220
50%이하	평균	1,870	7,301	8,89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표 2-7 지역 유형별 가구수 평균

단위: 가구

구분	50%이하 전체 가구(A+B)	50%이하 수급자 제외(A)	30%이하(수급자)(B)
전국 평균	5,845	1,702	4,14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O 지원 품목 및 지급방식: 채소류/과일류/우유/계란, 전자카드(바우처) 형태로 현물 지원
  - 산업비중, 유통체계 등 분석연구 반영
- O 통합연구 추진: 농식품 지원사업 전반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 중장기 각 사업의 통합 운영방안, 조직체계 정비, 평가방식 개편, 대국민 홍보, 국제 규정과의 관계, 법적근거 정비, 타부처 협의(교육부 식생활·급식제도, 복지부 사회보 장제도 심의)

- O '20년 예산 35억 원 중 지자체 시범적용(안): 29억 원
  - 계획안(3개월, 가구당 4만원) 지급 시 24,000여 가구 수준
  - 3가지 지역 유형별 가구(18천 가구 내외) 및 대조군(×2)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증적용이 가능
  - 대안으로 ① 대조군 제외, ② 필요시 추가소요 예산 지자체 부담

#### 1.8. 추진 경과

- 2012.12.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KREI, 이계임·황윤재·이동소)
  -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장기적인 식품지원정책의 개발 필요성을 지적함.
- O 2017.10.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KREI, 이계임·김상효·김부영)
  -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및 식생활 실태, 정부의 농식품 지원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2018.02.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농식품부,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
  - 기초생활급여의 식품비 항목이 현금지원 방식으로 본래의 목적인 식품 소비의 증가 와 영양섭취의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 바우처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2019.02.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실증 연구(농식품부,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윤·한정훈)
  - 농식품바우처의 실증 연구를 위해 완주군과 춘천시를 대상으로 2개월간 1인 가구는 월 3만원~ 4인 이상 가구는 6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예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운영 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시의 효과를 계측함.

- O 2019.11.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농식품부, 김상효·이계임·임소영·허성윤· 이욱직)
  - 농식품바우처의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향후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구체적 운영방 안을 제시함.
- O 2020.0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범사업전담기관으로 선정
- O 2020.04. 통합연구 수행기관 입찰 중

## 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2.1. 추진 배경

- O 국민의 안전과 행복,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해야할 국가의 책무
  - 생물농축, 바디버든2) 등 등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에 맞는 안심먹거리 공급
  - 임산부에게 친화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평생 건강한 삶 추구
- O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에 기반한 고투입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농업으로의 전환 필요.
  - 불임·난임의 원인으로 잘못된 생활습관. 유해물질 노출 등 의심
  - 출산경험이 없는 기혼여성의 난임 경험률은 38.0%(보건사회연구원/'18)
  -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환경부담 가중
  - 한국의 질소수지는 OECD 평균의 3.4배(1위), 인 수지는 8.6배(2위)('15)
  - 세계야생동물기금(WWF) 지정, 내분비교란물질 67종 중 43종이 농약3) 성분
- 국가인증을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기반은 '12년을 정점으로 감소, '15년 이후에는 생산기반 정체 및 판로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정체됨<sup>4</sup>).
  - 인증면적(ha): ('12) 164,289 → ('15) 82,764 → ('16) 79,479 → ('17) 80,114 → ('18) 78,544 → ('19) 81,718
  - 인증농가(호): ('12) 143,083 → ('15) 67,617 → ('16) 61,946 → ('17) 59,423 → ('18) 57,261 → ('19) 58,055

<sup>2)</sup> 인체에 쌓인 유해물질의 총량

<sup>3) (</sup>엔도설판) 토양살충제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생식·성장 장애, 사산, 기형 유발, (클로로탈로닐) 살균제로 쥐 실험 결과 정자 수 감소로 남성 불임 가능성

<sup>4)</su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portal/info/Info\_statistic\_cond.do#a), 친환경인증통계

-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미래세대 건강 및 친화경 농업에 따른 화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 확인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댓글·공감수 1위, 유사사업 5위·7위

#### 2.2. 추진 목적

- 미래세대5)의 건강 확보를 위해 현재 학교급식 수준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대학생. 군 인, 신혼부부, 임산부로 확대하여 국민건강 및 화경 보전에 기여함.
  - 특히 임신 및 출산을 앞둔 계층에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친환경농산 물 꾸러미 지원』을 통해 범정부적 과제인 저출산 해결에 일조
- O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확대

#### 2.3. 지원 대상

- O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를 발급 받은 임신부 또는 그 밖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지워신청서를 제 출한 자
  -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6 또는 임신부부터 지워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함.

<sup>5)</sup> 태아·신생아부터 성장기를 거쳐 2세를 임신·출산하기까지의 연령대로, 유해물질 노출에 특히 민감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sup>6)</sup> 출생신고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포함

<sup>7) 12</sup>월의 경우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의 신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 부는 본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8)

#### 2.4. 지원 품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 경농·축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2.5. 공급 체계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 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함〈그림 2-2〉.
  - (시범지역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공모 및 심의를 통해 광역시·도 2개소, 시·군·구 12개소 선정
  - (공급업체 선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 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유통업체 선정<sup>10)</sup>
  - (지원 신청) 신청서 및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 으로 제출하고 자격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sup>8)</sup>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sup>9)</sup>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한하여 지원

<sup>10)</sup> 선정된 공급업체는 12월까지 생산자 확보, 주문시스템 보완,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주문 및 배송) 임사부는 인터넷 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 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까지 지체 없이 배송
- (정산) 지자체는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 업시행지침 시달. 꾸러미 상품 유형 등 협의

#### 지원자격 확인

보건소에서 보유하는 임신·출생 및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중복지원 사 전 방지, 상호간 정보 공유(읍·면· 동↔보건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시범지역/공급업체 선정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지자체 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상지 역 내 친환경 산지유통조직 및 업체 중 공급업체 선정

#### 친환경농산물 공급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 상품을 선택 하면, 공급업체는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현물로 배송,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

#### 지원대상자 접수

산부인과로부터 임신확인서(임신 부). 출생증명서(산모)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지자체(시·군·구)로 제출

#### 사업비 정산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소요된 예산을 지자체에 신청하여 정산

O 시범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유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추진

#### 그림 2-2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2.6. 지원 금액 및 기간

- O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24회 이내)
  - 1회 공급 한도: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6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2.7. 예산 및 지원 근거

- O 재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예산규모: 9,060백만 원(국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친환경농산물 공급 8,640, 주문 시스템 구축 300, 교육·홍보 120
  - 지원 형태: 국비 40%, 지방비 40%11), 수혜자 부담 20%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등

#### 2.8. 추진 경과

- 2012.12.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KREI. 이계임·황윤재·이동소)
- O 2019.11.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도입방안 연구(KREI, 정학균·김상효·홍연 아·추성민)

<sup>11)</sup> 지방비 분담은 광역시·도 30%, 시·군·구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O 2020.4.(예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활성화 방안연구(농식품부, 정학교·임영아· 홍연아·추성민)
- O 20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진행 중)

## 2.9. 전담 기관 및 교육 홍보

- O 전담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O 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담기관별 역할은 〈그림 2-3〉과 같음.

그림 2-3 기관별 역할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공급업체	유통공사
사업준비 <sup>(10~12월)</sup>	○기본계획 수립 ○세부시행지침 수립 ○시범지역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 연구용역 추진 ○국회 예산심의 대응	○시군 의견수렴 ○시범사업 참여 신청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심의회 운영 ○시행계획 수립 ○사업담당자 교육	◦사업계획서 제출 ◦주문시스템 보완	○공급업체 선정 심의 ○전산시스템 구축 ○교육/홍보계획 수립 - 전문업체 선정 ○포장재, 홍보물 제작
신청접수 ('20.1월~)	ㅇ수혜자격 검증	ㅇ신청서 접수		ㅇ수혜자격 검증
농산물 공급 ('20.1월~)	ㅇ본 사업 예타 대응	o 공급업체 및 생산 농장 관리 감독 o 안전성 점검	o 친환경농산물 공급	○ 업체 공급실적 관리 ○ 공급업체 점검 ○ 불만민원 관리
정산 (매월말)	ㅇ사업비 교부	ㅇ사업비 집행(매윌)	ㅇ공급실적 제출	ㅇ정산 및 집행 총괄
교육홍보 (연중)	o 교육/홍보 총괄 o 기획보도, 기고 추진 o 성과분석 및 평가	o 자체교육 추진 o 교육/홍보 협조	o 교육/홍보 협조	○순회교육 추진 ○홍보 콘텐츠 제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3. 정부양곡할인 사업

#### 3.1. 지원 대상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 수급자 52만 명에게는 92% 할인율을 적용하며, 차상위계층 13만 명을 대상으로는 60% 할인율을 적용함.

#### 3.2. 지원 내용

- 정부양곡 구입 시 할인가격으로 공급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2,000원, 20kg 4,000원 각각 개인이 부담함(자부담율 8%)〈표 2-8〉.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0,100원, 20kg 20,000원을 개인이 각 부담함(자부담율 40%).
  - 공급연산: 2019년산 일반 쌀
  - 공급단량: 10kg 지대

#### ○ 공급 물량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12) 1인당 월 10kg
-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 제한

<sup>12)</sup> 가구원수 산정 기준: 보장가구에 속해있는 모든 가구원 수(단, 별도 가구로 보장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 O 공급 방식

- 공급 신청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 곡의 용도를 지정
  -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표 2-8 정부양곡할인사업 지원 단가

단위: 원

	구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10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F 000	2,000	23,000
10Kg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000	10,100	14,900
20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E0 000	4,000	46,000
20Kg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000	20,000	3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O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함.
  -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별도 계좌(양곡대금 출납전 용)'로 입금하거나 읍·면·동을 통해 현금으로 납부
- 복지용 쌀 공급현황: ('15) 81천 톤 → ('16) 79 → ('17) 84 → ('18) 94→ ('19) 111
- 대상자별 세부 공급내용〈표 2-9〉에 정리함.

표 2-9 2019년 복지용 쌀 공급 현황

구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보장시설	무료급식단체	경로당
대상	약 175만 가구	약 89만 명	약 4만 명	65,044개 소
지원량 ('19년)	98천 톤 (약 65만 가구*)	0.7천 톤	0.7천톤 0.8천톤	
추진시기	'02.2부터	'03.2부터	'02.9부터	'12년부터
공급가격 ('19년 기준)	1,960/10kg 9,800원/10kg	25,700원	6,250원	50,970원
수요자 구입가격 ('19년 기준)	1,960원/10kg (기초생활수급자) 9,800 (차상위계층)	25,700원	6,250원	50,970원
지원내용	양특회계 50%, 90%	양특회계 50%	양특회계 85%	복지부 25% 지자체 75%
비고	10kg/월/1인	1인/1식당/180g	1인/1식당/180g	연 6~7포/2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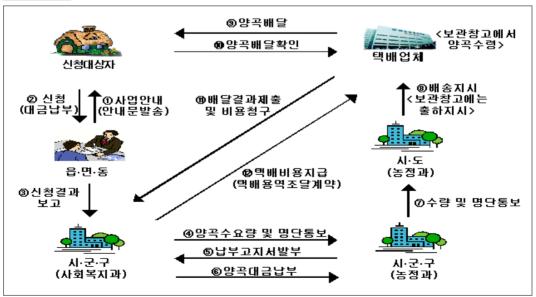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3.3. 공급 체계

- O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하고 구입신청서를 사회복지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 매월 10일까지 신청.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 이전일까지 신청 가능
- O 사실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하여 양정담당 부서에 수요 량과 인수예정일 제출(18일까지)
  - 지역별 인수 예정일이 다를 경우 반드시 양정부서에 통보하여 신선한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 양정담당 부서는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송부: 19일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 부서는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양곡 인도(출고)지시 서 발부 및 출고지시
- 택배업체(농식품부와 계약을 체결한 택배업체)는 출고지시서에 의해 지정창고에서 양 곡 인수
  - 창고 출고일 후 최단기간 내 민원인에게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 2차 배송지역 시·군·구는 배송일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일정 사전 안내 등 노력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 부서는 택배업체가 지역별 배송기한 이후에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에 즉시 보고
  - 업무간소화를 위해 공급량 신청, 대금납부고지서 발부, 대금납부 영수증 제출, 출고 지시서 등은 새올행정시스템, FAX 송·수신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

그림 2-4 정부양곡 공급 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3.4. 예산 및 지원근거

- O 예산: 2020년 254억 원(택배비)
- O 수급자: 92% 할인, 차상위: 60% 할인, 무료급식: 정액
- 지원근거: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 양곡의 판매)

#### 3.5. 추진 경과

- 2002.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50% 할인공급 시작(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
- 2004. 차상위계층 등 생계곤란가구 3개월 한시 정부양곡 반값 공급(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
- O 2005. 총리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05.7.6) 시 연장 결정
- O 2008. 양특회계 손실 확대에 따라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복지부 이과(39억 원)
- O 2009.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연중 공급 변경(198억 원)
- O 2010.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사업 농식품부에서 복지부 이관(복지예산 일원화)
- O 2016. 정상가격의 20% 할인(양특 부담) 공급하고 복지부 50% 할인 지원
  - 20% 할인금액 외 추가 할인금액은 복지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
- O 2017. 정상가격의 20% 할인(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 공급하고 복지부 50~90% 할인 지원 확대

- 참여윸 제고를 위해 2017년 1월 가격합인윸을 50~70%로 상향 조정했으나, 참여윸 은 2016년 말 45.8%에서 2017년 말까지 50.7%로 소폭 상승함. 가격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결정한 가구 수는 극소수(2016년 말 기준 80만 8,575가구 중 3만 9.811가구)에 불과해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O 2019. 농식품부로 업무 이관(택배비 165억 원)
  - 복지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할인금액은 양곡할인율로 대체하여 적용
  - 택배비는 정부양곡관리비 내역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배정
  - 지방비는 별도로 매칭하지 않을 예정이며(국고100%), 자부담윸은 현행을 유지하되 쌀값 변동 등에 따라 실제 부담 가격은 변동 가능
- O 2020. 정상가격의 60~92% 할인 지원 (택배비 254억 원)
- 3.6. 전담 기관 및 교육 홍보
- O 전담기관: 지자체, 공급업체
- O 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 4.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 4.1.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이 지속 상승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비만율: ('08) 11.2% → ('12) 14.7 → ('16) 16.5
- 비만은 식생활의 불균형 및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 당뇨병과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유발함.
  -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사회경제적 비용도 지속 증가
  - ('05) 3조 431억 원 → ('09) 5조 1,117 → ('13) 6조 7,695
  - 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3): 1조 3,638억 원
-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확대, 1인가구 증가, 해외여행으로 외국산 과일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지면서 국산 과일의 소비는 위축
  - 외국산 과일의 수입량은 지속 증가: ('05) 483천 톤 → ('10) 602 → ('16) 760
  - 사과·배 등 6대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지속 감소: ('95) 46.4kg → ('15) 43.7 → ('16) 40.6

#### 4.2. 추진목적

○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을 시작으로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추진이 필요함.

#### 4.3. 지원 대상

-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1~3학년) 전체 약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함.
  - 참여자 수 추이: ('18) 23만. ('19) 23만. ('20) 23만 예정
  - 사업 참여자 비율 추이: 전체 26만 중 매년 23만(88.5%)

#### 4.4. 지원 품목

- O (규격)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신선 과실·과채를 지원함.
  - 색택, 신선도 등이 우수한 농산물표준규격의 "상" 등급 이상
- O (형태) 국산 과일의 특성상 과일의 껍질 제거·절단, 용기별 배분 등에 따른 위생·안전이 확보(HACCP시설 가공)된 신선편이 형태를 지원함(그림 2-5).
  - 모든 형태의 가공제품(주스, 건조제품), 냉동형태의 제품(아이스딸기) 제외

#### 그림 2-5 신선편이 과일제품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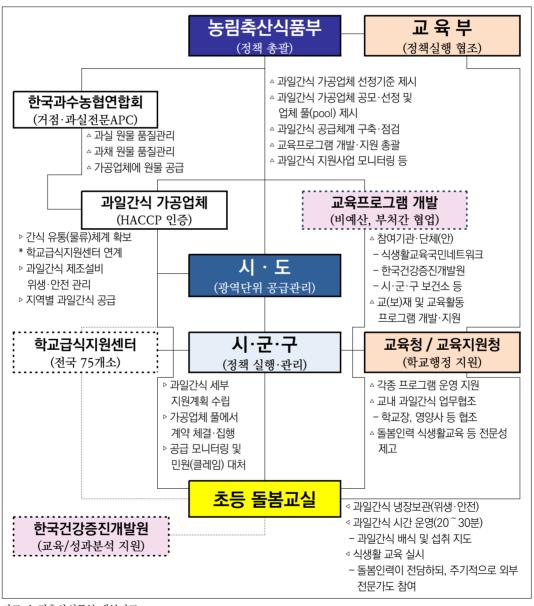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O (제품구성) 한 가지 품목을 하나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이 원칙, 복수 품목을 담는 경우 품목 간 맛·향·영양성분 조화 필요
  - 작은 크기의 포도, 자두,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등은 원형 그대로 공급 가능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한정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농산물 공급을 권장하고 있음.

#### 4.5. 공급 체계

그림 2-6 과일간식 공급 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4.6. 공급 횟수

- O 빵, 핫도그 등의 간식을 주 1회 이상 신선하고 품질 좋은 과일간식으로 대체하고, 1인당 연간 30회 제공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인당 1회 150g 내외

#### 4.7. 예산 및 지원 근거

- O 재워: 일반회계
- O 예산규모: 7,200백만 원(국비)
  - 국비 72억 원/년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근거: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과일간식 지원근거를 마련('18.9.18)
  - 국가는 학교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일·채소 등 간식 등을 지원가능(26조 ②항)

# 4.8. 추진 실적

- O '18~'19년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계속 추진
  - (지원대상) 초등학교(5,469개)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전체(24만 명)
  - (신청현황) 연 초등학교 5.019개 학생 224.403명 신청
  - (공급방식) 빵, 핫도그 등 간식을 컵과일(150g)로 대체, 1인당 연간 30회 제공
  - (지원예산) 국비 72억 원/년(국비 50%, 지방비 50% / \*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 O 성과지표

- 지속 필요성: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으로 기존간식(빵, 핫도그 등)을 국산 제철 과일 로 대체, 어린이 영양공급 및 식습관 개선 가능성 확인
- (식습관 개선) 초등돌봄 과일간식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국산제철과일에 대한 섭취도 1, 및 선호도 2, 증가(목표대비 성과 달성)〈표 2-10〉
  - 1」 사업 시행 전 대비 '18년 국산과일 섭취빈도 증가율: 3.8% (목표 3.0%)
  - 2」 사업 시행 전 대비 '19년 국산과일 선호도 증가율: 6.2% (목표 6.0%)
- (국민 체감도) 학부모, 학생 등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고, 농업계에서도 주요 농정성과 로 선정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
- (수혜자) 학부모 96%, 학생 90.2% 등 과일간식 사업 필요성에 대해 긍정 답변
- (농업계) 문재인 정부 농정 2년 성과에 '초등 과일간식 지원사업' 선정(농민신문)

#### 표 2-10 성과지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6년	'17년	'18년	'19년
	((당해연도 국산과일 선호도-	목표	신규	신규	5.0	6.0
① 과일간식 지원학생 국산 과일 선호도 증가(%)	사업시행 전 국산과일 선호도)/ 사업시행 전 국산과일	실적	신규	신규	5.8	6.25
72 CTT 8/ (////	선호도)×100	달성률(%)	신규	신규	116.0	104.2
© 710171117101 ÷111 A	71017111 7101 1171	목표	신규	신규	신규	22
② 과일간식지원 학생 수 (명)	과일간식 지원 신청 학생 수 합산	실적	신규	신규	신규	22.4
(0)	70 7 8 12	달성률(%)	신규	신규	신규	10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4.9. 전담 기관 및 교육 홍보

O 전담기관: 과수연합회, 가공업체

○ 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5.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 5.1. 추진 목적

- O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O 우유 음용 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 적 발전 도모

#### 5.2.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혐의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5.3. 지원 품목

- (지원품목) 백색우유(국내산 원유100%), 가공유(국내산 원유 99%이상), 유제품(가공 유, 치즈, 발효유 등)
  - 단,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 된 멸균유 또는 분유로 지원 가능
  -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 학교여건에 따라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을 주 1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함. 단, 이 경우 백색우유 음용을 위한 사전노력을 이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O (지원용량)

- 우유 용량: 200ml(단, 가공위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ml 이상)
- 유제품 용량: 치즈(15g 이상), 발효유(80ml 또는 80g 이상)
- (지원횟수) 급식일 250일 내외(1월 1일~12월 31일)

#### 5.4. 예산 및 지원 근거

O 재원: 축산발전기금

○ 예산규모: 2020년 373억 원

- 지원형태: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표 2-11〉

- 지방비 부담비율: 특·광역시 100%, 도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가능

#### 표 2-11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학교우유급식	61,705	61,705	61,705	61,693	185,115
- 보 조	37,016	37,016	37,016	37,016	111,048
- 지방비	24,689	24,689	24,689	24,677	74,067

주: '20년 이후는 중기수치임(574천 명\*430원\*250일\*3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 지원한도: 430원/200ml

- 단, 480원까지 지원 가능한 경우: 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③ 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학교

에서 급식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백색우유 등(멸균유 제외)을 주2회 이상 배달시 무상급식에 한하여 480원 까지 지원 가능(서울시 초등학교의 경우 전원 무상 급식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해당 없음). ④ 학교에서 무상급식만 실시하여 급식 시 신 분노출이 우려되어 가정으로 멸균유를 택배 등으로 배달시 지원 가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19조 등에 따라 우유급식 지원한도 금액인 430원으로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한도 이상의 우유 급식 시 지방비 또는 학생 자부담을 추가하여 급식 가능

#### O 지원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5.5. 성과지표

○ 전체 학생 수 중 우유급식 대상자의 비중으로 급식률을 산정함(표 2-12).

#### **표 2-12** 학교우유 급식률('18)

단위: 명, %

			급선	식학생		2018	2017	급식률
학교 전체학생 (A)	유상급식 (B)	지자체 무상급식 (C)	농식품부 무상급식 (D)	합계 (E=B+C+D)	급식률 (F=E/A)	급식률 (G)	증감 (H=F-G)	
초	2,711,385	1,127,276	532,192	336,740	1,996,208	73.6	76.2	△2.6
중	1,334,288	324,977	18,913	126,746	470,636	35.3	36.2	△0.9
고	1,538,576	212,686	11,395	118,806	342,887	22.3	22.5	△0.2
특수	25,860	437	280	24,620	25,337	98.0	97.6	0.4
합계	5,610,109	1,665,376	562,780	606,912	2,835,068	50.5	51.1	△0.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유상급식 대상자도 포함하여 급식률을 산정한 것으로 무상급식 대상자들의 급식률을 확인할 수 없음〈표 2-13〉.

#### 표 2-13 학교 우유급식 성과지표

단위: %

성과지표	2020	최	근 3개년 실	적	지표산출	측정방식
	목표치	'17	'18	'19(P)	시기	=884
학교 우유급식률(%)	50.5	51.1	50.5	50.5	익년 3월	급식률(%) = (급식 학생 수/전체 학생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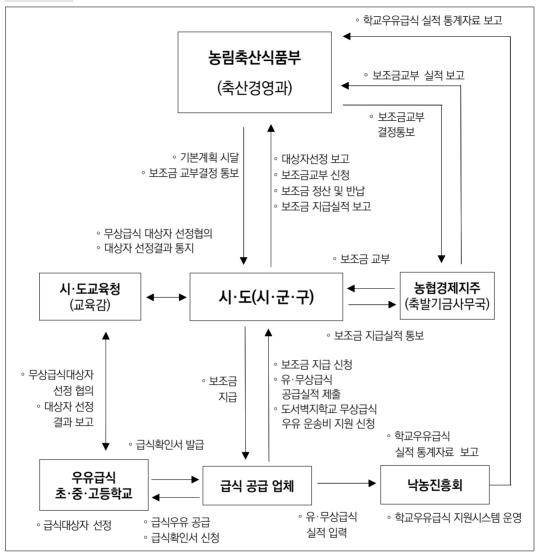
\_\_\_\_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5.6. 사업 추진 애로사항

○ 학교우유급식에 따른 영양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운영체계 개선방 안 등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음

# 5.7. 공급 체계

그림 2-7 우유급식 공급 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5.8. 추진 경과

- O '81년도부터 초등학생에 우유 보조급식 실시
- '04.9월 국무조정실「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에 따라 중·고등학생에게도 보조급식 지원 결정
- O '05년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원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
- O '06년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원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확대
- O '10년 학교우유급식 보조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
-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년)에 따라 중학생을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 여),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년)에 따라 고등학생을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급여),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20년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까지 확대

# 5.9. 전담 기관 및 교육 홍보

- 전담기관: 지자체, 학교, 공급업체
- O 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 6.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종합

○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지원제도를 표로 정리함〈표 2-14〉.

표 2-14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비교

구분	농식품 바우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정부양곡할인	학교우유급식
지원구분	가구	개인(어린이)	개인(임산부)	가구	개인(어린이)
지원대상	협의 중 (식품비 비수급 취약계층 대상)	전국초등 돌봄교실 (1~3학년) (확대 계획 중)	임산부 (임신부, 산모)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단체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교육 학생 등
지원품목	채소류, 과일류, 계란, 우유 등	과일/과채 (컵 과일 형태)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정부 양곡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백색우유, 가공유 등
공급체계	전자카드(바우처) 방식 수혜자 직접 구매	1인당 컵과일 형태 로 공급	인터넷 주문, 꾸러미 배달	읍·면·동에 신청 사회적 조합 택배	학교에서 공급
공급횟수	수혜자 필요 시 직접 구매	연간 30회 (방과 후)	12개월, 24회 이내 (월 1~2회)	매월 1인당 10kg, 1식당 1인당 180g	연간 250일 (급식 시)
지원 단가	1인 월 4만 원 (시범사업)	2천 원 (학기 중)	월 4만 원 (최대 12개월)	(수급) 2,000원 (차상위) 10,100원 (급식) 6,250원 (10kg 기준)	430원/200ml
예산배분	국비 100(시범) 지방비 20~30(본사 업)	국비 50 지방비 50 (서울: 국비 30)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수급) 92% 할인 (차상위) 60% 할인 (급식) 정액	국비 60 지방비 40
	35억 원(시범)	72억 원(시범)	91억 원(시범)	택배비 254억 원	373억 원
관련예산	('18) 5억 원 ('19) - ('20) 35억 원	('18) 72억 원 ('19) 72억 원 ('20) 72억 원	('18) - ('19) - ('20) 91억 원	복지부('18) 834억 원 농식품부 택배비 ('20년 254억 원)	('18) 370억 원 ('19) 370억 원 ('20) 373억 원
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양특회계	축발기금
관련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과 관련	식생활교육지원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관리법 (정부 관리 양곡의 판매)	낙농진흥법, 축산법
추진경과	복지부협의('18.11) '20 신규(국회 증액) 시범사업 예정	시범사업 3년 ('18~) 예타 중('19~)	복지부협의('19.8) '20 신규(참여 예산) 시범사업 진행	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19)	'81. 초등 보조 '05. 중고등 확대
전담기관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과수연합회 (가공업체)	(시범) 지자체 (공급업체)	지자체 (공급업체)	지자체, 학교 (공급업체)
교육 홍보	미정	정부, 지자체	정부, 지자체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토대로 추가 작성.

# 타 부처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현황

# 1. 보건복지부

####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O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 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O (추진경과)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이 되어 통합급여 지급방식이 아닌 대상가구의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됨.
- (지원대상) 2020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표 3-1〉 대비 각 급여별로 생계급여 30%. 의 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가 수급자 선정 기준임.
  - 이 중 식품비는 피복, 연료비 등과 함께 생계급여의 형태로 지급이 되며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함.
  - 생계급여 지원대상수: 2019년 126만 명, 82.1만 가구 → 2020년 126만명, 83.6만 가구

- 의료급여 지원대상수: 2020년 151만 명(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및 국가유공자 등 전 국민의 3%)

#### 표 3-1 2020년 기준중위소득

그ㅂ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주: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표 3-2 2020년 수급자 기준

구분				가구규모			
TE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주 1)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의료·주거급여는 대상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표 3-2〉.

#### O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sup>2) 8</sup>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O (지원근거)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법적 근거로 함.

#### ○ (지원금액)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 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4인가구 기준 최대급여액: 2019년 138 → 2020년 142만원
- 시설생계급여: 2019년 24.2 → 2020년 25.8만원
- 국고보조율: 81.34 → 81.83%
- 제도개선(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5,577억 원

#### ○ (지원금액) 의료급여

- 기관부담금(본인부담 제외 진료비): 6조 2,960 [6조 3,419억 원] → 6조 8.867억 원 (5,907억 원)
- 기본 진료비: 56.230 → 65.038억 원
- 기초1종: 6.697→7.731천 원(968천 명. 15.4% ↑)
- 기초2종: 1.382→1.762천 원(364천 명. 27.5% ↑)
- 타법1종: 4,266→5,099천 원(92천 명, 19.5% ↑)
- 진료비 미지급금: 5.400 → 1.087억 원(△4.313억 원)
- 부양의무자 등 자격 기준 완화: 1.965 → 3.423억 원(1.458억 원)

#### O (예산)

- 생계급여: ('19) 3조 7.508 [3조 7.617] → ('20) 4조 3.379억 원(5.871억 원. 15.7%)
  - \* 추경 대비 [5,762억 원, 15.3%]

- 의료급여: ('19) 6조 3,915 [6조 4,374] → ('20) 7조 38억 원(6,122억 원, 9.6%) \* 추경 대비 [5.664억 원, 8.8%]

#### O (급여의 신청)〈표 3-3〉

-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 [법 제21조제1항]
- 직권주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법제21조제2항].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생활실태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군·구청은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까지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제도 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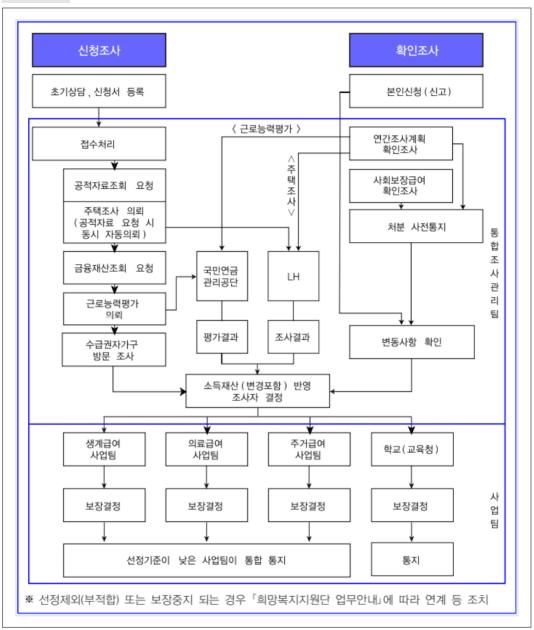
# 표 3-3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	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 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인	• 신청권자: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 기준	소득인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액기준	<ul> <li>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li> <li>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li> <li>기본재산액: 급여별 기준금액 차이</li> <li>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li> <li>의료급여: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li> <li>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li> </ul>
	부양 의무자 기준	<ul> <li>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li> <li>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li> <li>부양능력 입음: 수급자로 보장결정</li> <li>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li> <li>부양능력 있음: 수급자로 보장 불가</li> <li>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일부)</li> <li>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22,800만 원), 중소도시(13,600만원), 농어촌(10,150만 원)</li> <li>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li> </ul>
조사	조사내용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O 업무처리 프로세스〈그림 3-1〉

그림 3-1 업무처리 프로세스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1.2. 긴급복지지원

- O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 방지 등을 위해 시행함.
- O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 2019년 258,061 → 2020년 295,147건
- O (지원근거)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을 법적 근거로 함.
- (지원내용) 〈표 3-4〉

표 3-4 긴급복지지원 지원 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 원 (4인기준)	6회	
금전 ·	위기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2회	
	상황 주급여 ①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 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ը 년 현물 지원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 원 이내 (4인기준)	6회	
AL.	부가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221.6천 원, 중 352.7천 원, 고 432.2천 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③	
	급여 ②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 원/월 - 해산비(70만 원)·장제비(80만 원)·전기요금(50만 원 이내): 각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					<sup>호</sup> 횟수제한 없음	

주 1)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sup>2)</sup>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sup>3)</sup>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0 긴급지원사업안내

#### O (지원금액) 〈표 3-5〉

#### 표 3-5 생계지원 지원금액

78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주: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0 긴급지원사업안내

#### O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 확인(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 환 또는 종료)
- 현장 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 (예산) ('19) 1,422 [1,626] → ('20) 1,656억 원(234억 원, 16.5%)
  - \* 추경 대비 [30억 원, 1.8%]
  - 생계지원: 866 → 1.020억 원
  - 의료지원: 450 → 514억 원
  - 주거지원: 52 → 59억 원
  - 시설이용지원: 0.9 → 1.1억 원
  - 그 밖의 지원(교육지원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 전기요금지원): 52 → 61억 원
  - 긴급지원 사업 운영비 1.5 → 1.8억 원

#### O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

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기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 단기 지원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지원이 종료 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 다른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13) 이내에는 지원 불가14)
-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 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 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의 료·교육지원 등의 경우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개인단위 지원)

#### O 긴급지원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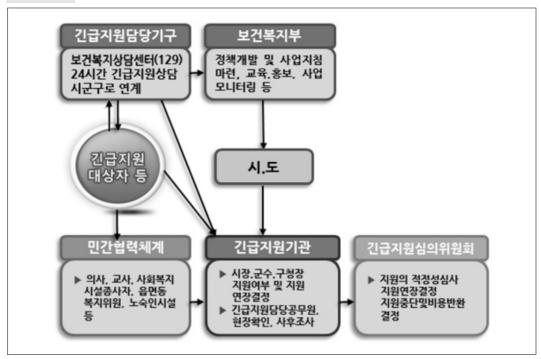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 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sup>13)</sup> 단, 시군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경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

<sup>&</sup>lt;sup>14)</sup> 의료지원 예외

#### ○ 긴급지원체계〈그림 3-2〉

그림 3-2 긴급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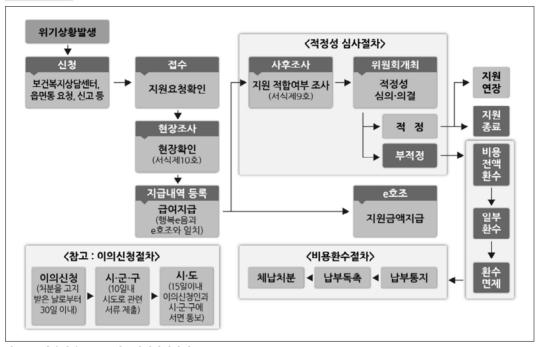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20 긴급지원사업안내

- (긴급지원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접수·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지원 (사후조사 등)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요청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등 심의·의결
- (긴급지원 담당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상담(접수)·정보제공 및 기관·단체 등 연계
- (민간협력체계): 의사 등 의료기관종사자, 교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 대상자 조기발굴(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

#### ○ 긴급지원의 절차〈그림 3-3〉

그림 3-3 긴급지원의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2020 긴급지원사업안내

# 1.3. 아동급식지원

O (도입) 식사 또는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실시됨.

#### O (추진경과)

- 사업 초기에는 석식만 지원
- 2001년, 조식까지 지원이 확대
- 2004년, 교육부에서 담당하던 방학, 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지원사업이 보건복 지부로 이관

- 2005년,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지방 이양

####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만18세 미만 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15)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 구의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기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 기준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②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 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sup>15)</sup> 차상위 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표 3-6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

단위: 명

								<u> </u>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인원	471,961	438,042	416,092	381,838	350,109	332,865	317,234	357,127

자료: e-나라지표, 아동급식지원 현황

#### O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

#### O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 ① 학기 중 중식 지원: 교육청(학교급식)
- ②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서 실시(교육청과 협의)
- ③ 방학 중 중식 지원: 지방자치단체
- \* 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 방법으로 지원
- (예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함〈표 3-7〉.

표 3-7 시도별 아동급식지원 예산 및 단가

단위: 백만 원, 원

구분	지자체 예산(백만 원)	지원단가(원)
계	284,554	4,000-6,000
서울	43,556	5,000
부산	10,752	4,500
대구	13,012	4,000
 인천	11,670	4,000-4,500
 광주	12,270	4,500
 대전	6,527	4,000
 울산	5,742	4,500
 경기	67,220	6,000
 강원	10,321	4,000
<del></del>	14,874	4,000
 충남	10,534	4,000
 전북	18,870	4,500-5,000
전남	8,889	4,000
 경북	18,021	4,000
 경남	24,115	4,000
제주	6,992	5,000
세종	1,189	4,000

자료: 급식뉴스(http://www.newsf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49), 2018.10.29

#### 1.4. 노인급식지원

O (도입) 1991년 3월부터 국가에서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하기 시작함.

#### O (추진경과)

- 1980년대까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1991년 3월부터 국가에서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설치·운영되기 시작
- 1999년 하반기 전국에 있는 모든 경로식당에 국고지원 시작
- 2000년 4월 8일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사업을 실시

- 2005년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화

#### O (지원대상) 경로식당 무료급식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노인돌복기본서비스사업을 통해 수요가 파악된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사업 수행단체에 연계 지원
- 급식기관: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급식기관으로 지정,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 가 20인 이상(읍·면지역은 1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 가능

#### O (지원대상)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 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O (지원근거) 노인복지법(제4조의1. 제1항)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O (지원내용)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 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
- 단.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 금지

#### O (지원내용)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노인의 건강·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밥, 국, 밑반찬, 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 식사 제공 시 이용노인이 가정식처럼 느끼도록 보온을 유지하고 부패방지가 가능한 용기 사용
- 대다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치료식(당뇨병, 고혈압)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식생활 지도
- (지원금액) 경로식당의 1식 단가는 2019년 기준 대구, 경북, 경남이 2,30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가 4,500원으로 가장 높았음〈표 3-8〉.

#### 표 3-8 16개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단위: 명, 원

		1	일 평균 0	용인원(명)	경로식당 1식 단가(원)				
시·도	09년	10년	11년	12년	17년	19년	12년	17년	19년
서울	15,282	15,335	17,000	21,248	23,582	26,327	2,800	3,000	식당 3,500 배달 3,500 반찬 3,600
부산	6,424	6,527	8,000	8,000	30,000 <sup>2)</sup>	7,150	2,300	식당: 2,500 배달: 2,500	식당 2,500 배달 2,500 반찬 3,600
대구	2,109	2,107	2,200	2,200	1,660	2,350	1,800	식당: 2,300 배달: 3,000	식당: 2,300 배달: 3,000
인천	3,697	3,765	4,811	5,118	5,300	5,307	식당: 2,000 배달: 2,500	식당: 2,000 배달: 2,500	식당: 2,700 배달: 2,700
광주	3,500	3,780	3,800	3,820	5,118	4,050	식당: 2,000 배달: 2,300	식당: 2,500 배달: 2,500	식당: 3,000 배달: 3,000
울산	2,800	3,100	3,740	3,980	5,921	6,916	식당: 2,300 배달: 2,500	식당: 2,300 배달: 2,500	식당: 2,500 배달: 3,000
대전	2,421	2,471	2,471	2,471	3,705	3,900	식당: 2,500 배달: 2,550	식당: 2,500 배달: 2,550	식당: 2,500 배달: 2,550
경기	19,211	19,556	25,352	24,067	30,222	46,073	식당: 2,300 배달: 2,800	식당: 2,500 배달: 3,000	식당: 2,700 배달: 3,500
강원	8,913	9,169	-	-	1,186	-	식당: 2,500 배달: 2,700	시군마다 다름	시군마다 다름
충북	3,090	3,090	3,216	3,216	3,725	3,724	3,000	식당· 3,500 배달: 3,500	식당· 3,500 배달: 3,500
충남	2,952	3,040	3,300	3,463	4,870	8,000	3,000	식당: 3,000 배달: 3,000	식당: 3,420 배달: 4,735

(계속)

시·도	1일 평균 이용인원(명) <sup>1)</sup>						경로식당 1식 단가(원)		
\\'-\'-\'-\'-\'-\'-\'-\'-\'-\'-\'-\'-\'-	09년	10년	11년	12년	17년	19년	12년	17년	19년
전북	4,215	4,215	4,570	5,943	4,000	4,300	2,500	식당: 2,500 배달: 3,000	식당: 2,500 배달: 3,000
전남	4,885	5,275	5,275	5,559	5,043 <sup>3)</sup>	6,532	2,000	식당· 3,500 배달: 3,500	식당· 4,000 배달: 4,000
경북	6.000	6,000	6,000	6,125	8,183 <sup>4)</sup>	8,559	2,000	식당: 2,300 배달: 3,000	식당: 2,300 배달: 3,000
경남	16,200	16,300	16,300	16,300	7,741	1,254	2,000	식당: 2,300 배달: 2,300	식당: 2,300 배달: 2,300
제주	526	545	1,630	1,105	1,940	2,040	3,500	식당: 4,500 배달: 4,500	식당: 4,500 배달: 4,500

주 1) 실이용인원과 무료급식 등록자수가 다를 수 있음.

O (예산) 노인급식지원사업의 예산은 급식이용 인원의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표 3-9〉.

#### 표 3-9 16개 광역시·도별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 예산

단위: 백만 원

	0014	4014	4419	4014	4714	4014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7년	19년
서울	11,786	11,834	12.833	16,813	21,100	28,992
부산	3,100	3,645	4,205	4,372	4,900	4,990
대구	383	395	395	395	340	1,340
 인천	1,922	1,996	1,892	2,815	3,297	3,610
 광주	1,500	1,909	2,219	2,337	3,845	3,645
 울산	1,400	1,550	1,935	2,240	2,796	2,731
 대전	1,162	1,186	1,817	2,065	2,189	1,680(시비)
 경기	10,496	10,704	13,160	15,287	16,460	25,313
강원	3,728	3,861	3,861	3,861	도비: 0% 시군비: 100%	도비: 0% 시군비: 100%
충청(북)	2,781	2,781	2,894	2,894	3,911	도비: 0% 시군비: 100%
	2,345	2,418	2,700	2,767	3,089	3,089
전라(북)	2,607	2,607	3,157	3,260	3,660	3,833

<sup>2)</sup> 부산, 인천, 광주의 경우 1일 평균 이용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인원으로 조사함.

<sup>3)</sup> 경상남도의 경우 경로식당만 도에서 지원, 식사배달은 도의 지원 없이 시군별 진행

자료: 오민수 외(2019),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pp. 25-27 발췌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7년	19년
전라(남)	2,588	2,671	2,671	2,841	5,295	6,422
경상(북)	1,827	1,827	2,496	2,548	4,984	5,300
	_	-	447	448	6,175	300
제주	730	820	777	944	1,496	도비: 0% 시비: 100%

주 1) 대전은 시비 75%, 구비 25%로 예산액은 시비 75% 기준 금액임

#### 표 3-10 16개 광역시·도별 인건비 지원 현황

단위: 만 원

구분	종사자 인건	비지원 유무	종사자 인건비 보조액		
	영양사	취사원	영양사	취사원	
서울	0	0	666	833	
부산	X	X	X	Χ	
대구	X	X	X	Χ	
인천	X	X	X	Χ	
 광주	X	X	X	X	
울산	X	X	X	X	
대전	X	X	X	Χ	
경기	X	0	X	1,290	
강원	X	X	X	X	
충청(북)	X	X	X	X	
충청(남)	X	X	X	X	
전라(북)	X	X	X	X	
전라(남)	X	X	X	X	
경상(북)	X	X	X	Χ	
경상(남)	X	X	X	X	
제주	X	X	X	X	

자료: 오민수 외(2019),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pp. 29

# 1.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O (도입) 2015.10.30에 사업 시행함.

<sup>2)</sup> 경상남도는 도사업으로는 도시락배달사업은 하지 않으며(시군에서 별도 추진), 무료급식사업은 도비 3억, 시군비 4.5억 매칭하여 추진

자료: 오민수 외(2019),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pp. 28

#### ○ (추진경과)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선정('12.12월)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국정과제(62-1)로 확정('13.5월)
  - \* 국정과제 62(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 (62-1)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14.1~11월)
  -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법) 종합평점 0.512로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 '15.10.30. 사업 시행(기준증위소득 40% 이하, 기저귀 32천 원·조제분유 43천 원)
- '16년 지원단가 인상(기저귀 32천원→64천원, 조제분유 43천 원 → 86천 원)
- '17년 기저귀 지원 사업기간(생후 0~24개월) 확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 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족 양육아동 조제분유 지원 추가
- '18년 조제분유 지원대상 추가(산모의 의식불명, 영아 입양가정 등)
- '19년 자격확인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 '20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지원 확대 및 조제분유 지원대상 추가(산모의 유선 손상 등)

#### ○ (지워대상)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 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O (지원대상)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 ~ 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 2020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 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 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자,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에 한함(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 례에 관한 기준 고시 참고)

#### O (예외 지원대상)

- 기본 지원대상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 하여 추가 지워 가능
- 예외 지원은 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방침에 따라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 지원 기준을 초과하 여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전액 시·군·구비로 부담함
-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 (지원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 O (지원내용 및 금액) 〈표 3-11〉

표 3-11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원)	비고	
기저귀 지원	가 유형	64,000	예외지원 <sup>2)</sup> 라 유형과 동일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150,000	예외지원 마 유형과 동일	
 조제분유 추가지원 <sup>1)</sup>	다 유형	86,000원	예외지원 바 유형과 동일	

주 1)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지원신청 시

○ (예산) 2019년 174 → 2020년 174억 원

<sup>2)</sup>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자체(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외 지원대상자에 대해 서도 지원하는 경우의 지원유형

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 2020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 1.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1.6.1. 영양플러스사업

○ (도입) 2004년 영양취약계층 대상의 국가 영양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의 모델(안)을 근거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 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함.

#### O (추진경과)

- 2004년, 사업안 마련: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영양지원제도 도입연구
- 2005년, 1차 시범사업 실시(3개 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2006년, 2차 시범사업 실시 (11개 시·도 15개 보건소)
- 2007년, 3차 시범사업 실시 (13개 시·도 20개 보건소)
- 2008년, 전국 단위 사업 실시 (16개 시·도 153개 보건소)
- 2009년, 전국 16개 시·도 245개 보건소로 사업 확대 실시
- 2010년, 전국 16개 시·도 250개 보건소에서 사업 실시
- 2011년, 전국 16개 시·도 251개 보건소에서 사업 실시
- 2012년, 전국 17개 시·도 252개 보건소에서 사업 실시(세종특별자치시 출범)
-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영양 분야'로 통합 추진
- 2018년, '온라인 영양교육과정' 시스템 구축 및 도입
- 2019년, 전국 17개 시·도 252개 보건소에서 사업 실시(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제외)

#### O (지원대상)

- 영유아(만 6세(생후 72개월) 미만)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지원근거) 「국민건강증진법」、「국민영양관리법」、「지역보건법」

서울 경기 6,051(39.1) 강원 4,763(39.0)
1,814(36.4) 4.803(31.0) 3.237(26.5) 1.435(28.8) 1,217(7.9) 전국 전체 **1,244(10.2) 559(11.2)** 3,423(22.1) 2,979(24.4) 1,182(23.7) 82.045명 인천 충북 9 1,486(34.8) 경북 충남 9 1,445 (35.4) **1,538(36.0)** 9 1,505(36.2) 3,353(39.0) 1,370(33.6) 전국 영아 393(9.2) **2,352(27.4)** 1.164(28.0) **424(10.4)** 대구 30,712g \$ 857(20.1) 416(10.0) **879(10.2)** 843(20.7) 9 1,260 (38.0) 37.4% 1,073 (25.8) 2,007(23,4) 838(25.3) 461(13.9) 전국 유아 756(22.8) 세종 -24,3939 @ 111(46.4) 29.7% 1,746(37.4) 울산 **1** 21(8.8) 1,383(29.6) 509(38.9) **A** 29(12.1) 전국 임신부 448(9.6) 369 (28.2) 78(32.6) 1,096(23.5) 90(6.9) 8.1699 342(26.1) 10.0% 대전 -전국 출산수유부 664(43.7) 355(23.3) 18,771명 140 (9.2) 전남 경남 부산 22.9% 362(23.8) 9 1,602(33.8) @ 2,008(38.5) Q 1,375(34.4) **1,259(31.5)** 1,755(37.1) 1,400(26.9) **\$ 586(11.2)** 530(13.2) **425(9.0)** 

그림 3-4 시·도별 등록 대상자 현황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3-2018) 영양플러스사업 성과자료집

571(31.3) 718 (39.4) 145(8.0)

388(21.3)

838(20.9)

· 1,217(23.4)

952(20.1)

Q 449(31.9)

**\$ 396(28.2)** 183(13.0) 378(26.9)

#### O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보충식품 공급: 생애주기 및 특성에 따라 총 6가지 식품패키지로 구분하고 한 달 분량을 월 1~2회 가정배달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임, 식품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기본으로 공급함〈그림 3-5〉,〈표 3-12〉.

#### 그림 3-5 보충식품의 종류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3-2018) 영양플러스사업 성과자료집

표 3-12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식품명	식품패키지 1 영아, 0개월~ 6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2 영아, 6개월~ 12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3 영아, 만 1세~ 만 6세 미만	식품패키지 4 임신· <del>수유부</del>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 수유부
조제분유	필요량의 1/2까지	필요량의 1/2까지				
감자		25g	25g	50g	50g	50g
달걀		60g(노른자)	60g	60g	60g	60g
당근		18g	18g	35g	35g	35g
쌀		45g	45g	90g	90g	90g
우유			400ml	400ml	200ml	200ml
검정콩			10g	15g	15g	15g
김			3g	3g	3g	3g
미역				2.5g	2.5g	2.5g
닭가슴살 통조림						27~30g
귤·오렌지주스						귤 중 1개 주스 200㎖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3-2018) 영양플러스사업 성과자료집

O (지원금액) 주 1~2회 제공 기준 월평균 7만원

O (예산) 식품지원비 2019년 120억원〈표 3-13〉

#### 표 3-13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비 예산 및 집행액(국비)

단위: 백만 원

연도	예산	집행액
2016	12,020	11,278
2017	11,955	10,704
2018	12,178	11,786
2019	12,005	11,820

주: '13년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산출이 어려우며, '16년부터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내 보충식품비 예산만 지자체 입력 결과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내부자료.

# 1.6.2. 건강과일바구니지원사업

○ (도입) 2011년 '취약아동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 시범사업' 으로 시작함.

# O (추진경과)

- 2011년 '취약아동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 시범사업' 으로 시작
- '건강과일바구니'라는 사업명칭으로 2012년까지 시범 실시
- 2013년, 영양분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지침이 지 자체에 시달
- 현재는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없이 지자체 별도 시행
- O (지원대상) 희망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청소년
  - 교내 「초등 돌봄교실」이용 어린이 등
    -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아동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 우선 선정기준
  -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어린이·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아동센터
  - \*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등록되어있는 지역아동센터
- O (지원근거)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지역보건법」
- O (지원내용) 건강간식 제공
  - 제공 간식의 종류는 단가 범위 내에서 제철식품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의 기호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가 번갈아 제공될 수 있도록 함〈표 3-14〉.

표 3-14 건강간식 종류 및 대상별 1회 배식분량

구분	건강간식 종류	6~11세 어린이 가식분량 및 눈대중량	12~18세 청소년 가식분량 및 눈대중량
	딸기, 수박, 참외	150g - 딸기 7개 - 참외(중) 1/2개 - 수박(중) 1쪽	300g - 딸기 14개 - 참외(중) 1개 - 수박(중) 2쪽
과일류	귤, 감, 바나나, 망고, 키위, 사과, 배, 복숭아,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100g - 귤(중) 1개 - 감 1개 - 바나나 1개 - 사과(중) 1/2개 - 오렌지 1/2개 - 포도 1/3송이	200g - 귤(중) 2개 - 감 2개 - 바나나 2개 - 사과(중) 1개 - 오렌지 1개 - 포도 1/2송이
채소류	오이, 당근, 단호박, 샐러리, 토마토(방울토마토)	70g	140g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 1.7. 푸드뱅크

O (도입) 푸드뱅크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듬해 6월에 보건복지부 100대 국정과 제로 선정되면서 시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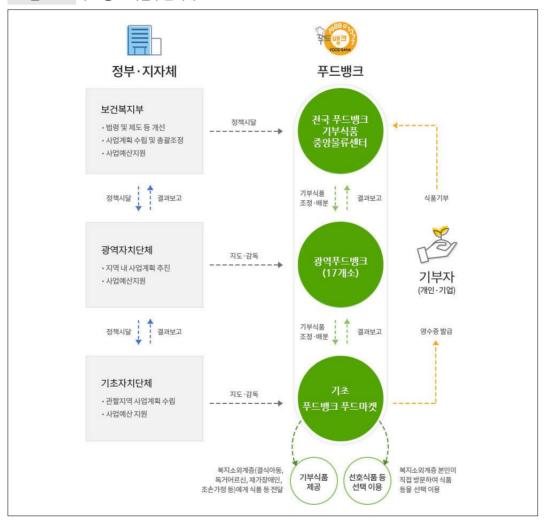
#### O (추진경과)

- '98. 1: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서울, 부산, 대구, 과천)
- '00. 5: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보건복지부)
- '01. 8: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구축·운영(www.foodbank1377.org)
- '02. 7: 「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구축·운영
- '06. 3: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06.3.24. 공포. '06.9.25. 시행)
- '09. 9: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개소(대전 유성구 대정동 302-1)
- '11. 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11.4.28. 공포·시행)
- \* (양벌규정 개정)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예외
- '15.12: 차세대「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구축

- '16.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16.2.3. 공포, '17.2.4. 시행)
  - \* 기부 대상을 식품에서 개인위생에 관한 생활용품까지 확대('17.2월), 제명변경, 기부 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사업장에 대한 평가
- '18. 7: 기부식품등 중앙물류센터 이전(세종시 연동면 연청로)
- '18. 12: 전국푸드뱅크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운영

#### ○ (추진체계) 〈그림 3-6〉

그림 3-6 푸드뱅크 사업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https://www.foodbank1377.org/New/Index.jsp)

# O (주요현황) 2019.12.31. 기준 〈표 3-15〉, 〈표 3-16〉, 〈표 3-17〉

표 3-15 운영 형태별 사업장 수

78	ы	저그리아네다	가(GTIOIME)	기	초	
<del>************************************</del>	구분 계 전국지원센터	신독시현센터	광역지원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 소	454	1	17	308	128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 표 3-16 지역별 사업장 수

구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광역 지원센터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기초 푸드뱅크	5	18	12	12	15	12	7	1	73	21	26	20	18	25	21	20	2	308
기초 푸드마켓	30	16	8	14	2	8	2	0	17	1	5	6	7	3	3	4	2	128
계	36	35	21	27	18	21	10	2	91	23	32	27	26	29	25	25	5	453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 표 3-17 운영 주체별 사업장 수

운영주체	사회복지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시·군·구	개인	비영리 민간단체	계
개소	199	16	57	13	4	8	89	67	453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O (운영실적) 〈표 3-18〉, 〈표 3-19〉

# 표 3-18 연도별 운영실적 통계

단위: 명, 천 건, 천 개, 백만 원

연도		접	수		제공				
간포	총기부인원	기부건수 수량		금액	총이용인원	이용건수	수량	금액	
2016	15,450	835	157,879	178,316	308,965	9,708	152,362	171,489	
2017	15,328	877	202,746	202,803	290,381	10,756	191,163	188,875	
2018	15,300	843	246,741	219,849	314,454	12,348	253,170	217,994	
2019	15,770	853	138,136	236,548	326,239	13,696	433,584	228,944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 내부자료

표 3-19 연도별 운영실적 통계2

단위: 명, 백만 원

					개인이용자		단체이용자
연도	기부액	기부자수	이용자	기초생활 수급자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시설, 단체
2016	178,316	15,450	308,965	116,686	46,833	130,121	15,325
2017	202,803	15,328	290,381	105,001	42,777	128,120	14,483
2018	219,849	15,300	314,454	114,710	45,559	139,849	14,336
2019	236,318	15,770	326,239	117,432	49,442	143,344	16,021

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 내부자료

# 미국의 식품지원제도

# 1. 미국의 식품지원제도의 필요성: 미국의 기아(Hunger) 문제

- 美의회는 오랫동안 미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의 식품 지원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최근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국민이 식품을 충분히 구입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식생활의 질 향상, 비만 감소, 식생활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국민건강 상의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기아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기아'가 아닌 '식품안정 (Food Security)'과 '식품불안정(Food Insecurity)'이라는 용어가 미국 국민의 식품 취득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 O USDA에서 말하는 '식품안정'과 '식품불안정'은 개인의 식품구매와 식품섭취 능력에 대한 경제적인 원인과 식품 구매 관련 다른 원인들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O 2006년 이후, USDA-ERS는 식품안정의 범위를 4가지 수준으로 인지하였음.
  - (식품안정) ① 높은 식품안정: 가구는 충분한 식품을 지속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나 불안이 없음. ② 한계 식품안정: 가구는 때때로 충분한 식품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문제가 있지만, 식단의 질, 다양성, 양은 크게 줄지 않았음.
  - (식품불안정) ① 열악한 식품안정: 식단의 질과 다양성, 건전함이 줄었지만 가구의 식품 섭취량과 정상적인 식사 패턴은 큰 차질을 빚지 않았음. ② 매우 열악한 식품안정: 돈이나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한 해 동안 가구원 중 1인 혹은 그 이상의 식사 패턴이 흐트러지고 식품 섭취량이 줄었음.
- 2017년 USDA-ERS는 미국 가구의 11.8%('가구'는 1인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식품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파악함⟨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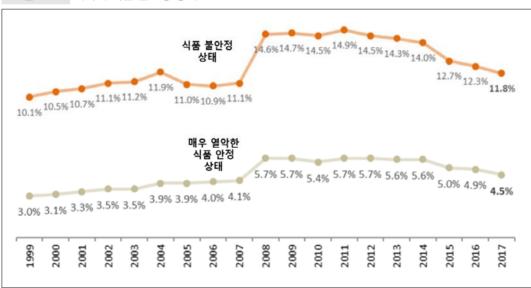


그림 4-1 미국의 식품 불안정 상태

자료: Aussenberg and Colello(2019).

- 2017년 미국 가구의 11.8%(150만 가구)는 식품불안정 상태였는데. 이는 2016년 12.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임.

- 2017년 미국 가구의 4.5%(580만 가구)는 매우 열악한 식품안정 상태였음. 이는 2016년 4.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였음(가구의 매우 열악한 식품안정 상태는 식품불안정에 포함됨).
- 2019년 7월 기준 식품불안정 가구의 58.4%는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여성·영유아·아동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WIC),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NSLP)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음. 그러나 설문응답자들이 종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받은 사실을 소극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이 보고는 과소평가되었을 수도 있음.
- O 또한 USDA-ERS는 다양한 집단과 가구 유형에 대한 식품불안정 비율을 분석하여 국가 식품불안정 비율의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파악하였음.
- 이처럼 국민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기아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취약계층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연방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음.

# 2. 미국 식품지원제도 현황

# ■ 미국 식품지원제도 개관

- 미국은 식품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농무부 식품영양서 비스국이 식품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노인청도 고령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식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표 4-1〉.
- 각 프로그램별 식품을 지원하는 방법은 대상자(예: 임산부, 아동, 고령자), 자격 요건, 제 공되는 지원의 유형(예: 일반 식품, 간편 식품) 등의 차이를 보임.
- 농무부 농업법 산하에 있는 6개의 식품 지원사업들은 전체 식품 지원사업 예산의 67.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여성/영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양프로그램들이 31.3% 를 차지하는데, 전체 예산의 99%를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이 주관하고 있음.

#### 표 4-1 미국 식품지원제도 개관

단위: 억 원

_	, н	T = 7 31	WITE	국내 유사사업	UTI → E
Т	1분	프로그램	예산	사업명	예산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SNAP)	673,480	생계급여	16,093
		1000/10-11-0(UNAI)	070,400	농식품바우처지원	35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TEFAP)	8,467	간급지원(생계지원)	614
	농업법	지역식품프로젝트(CFP)	57 <sup>c)</sup>		
		농산물보충식품프로그램(CSFP)	2,859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FVP)	1,944 <sup>c)</sup>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144
		고령자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SFMNP)	237 <sup>c)</sup>		
농무부 식품		여성·영유아·아동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 (WIC)	58,579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친환경농산물꾸러미	2,846 281 11 91
9양 서비스국	WIC& 어린이	WIC 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 유 지원	174
	영양	(WIC-FMNP)	209 <sup>c)</sup>		
	프로그램	학교아침프로그램(SBP)	51,155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NSLP)	160,053		
		여름식품서비스(SFSP)	5,300		
		특별우유프로그램(SMP)	79	학교우유급식사업	373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CACFP)	41,957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FTS)	57 <sup>c)</sup>		
	소계	14개 프로그램	1,004,432	10개 프로그램	20,662
보건	   고령자법	집단영양프로그램(CNP)	5,597	노인급식	920
포년 복지부	프로그램	가정배달영양프로그램(HDNP)	2,840	<u> </u>	
77.11	(OAA)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GNASNS)	387		
노인청		영양서비스인센티브프로그램(NSIP)	1,809		
	소계	4개 프로그램	10,633	1개 프로그램	920
	통계	17개 프로그램	1,015,065	11개 프로그램	21,582

주 1) 환율 1,130원/달러 적용.

○ 미국의 식품지원 사업은 농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1940년대 시범 사업이었던 '푸드스탬프'는 1달러로 어떤 식품이든 구매할 수 있는 '오렌지 스탬프'와 동시에 잉여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50센트 상당의 '블루 스탬프'를 제공하였음.

<sup>2)</sup> c) 미의회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예산이 반영된 수치임.

<sup>3) 2018-19</sup>년은 노스캐롤라이나 데이터 missing

<sup>4)</sup> 생계급여, 긴급지원 중 식품비 기준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에 식품비 비중인 37.1%로 계산함.

자료: USDA(2020), HHS-ACL(2020), Aussenberg and Colello(2019), Aussenberg and Billings(2019).

○ 최근의 경우 2014년 농업법(P.L. 113-79), 2010년 아동영양개정법(P.L. 111-296). 그리고 USDA의 발의안의 지역농장에 대한 학교식당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농장학 교(farm-to-school)" 실시를 촉진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됨.

# 3. 미국 개별 식품지원제도

3.1.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SNAP) 및 SNAP-Ed

#### 3.1.1. SNAP

- O (도입) 1939년 대공황 시기에 첫 시도 후 1964년 제도화 됨.
- O (추진체계) 미국 USDA의 식품영양소비자국(FNCS) 소속인 식품영양서비스국(FNS)에 서 학교급식 등 타 영양프로그램과 함께 SNAP을 담당하고 있음.
- O (결산 기준) '19년 582억 달러(약 69.2조 원)(표 4-2)

표 4-2 SNAP 연도별 예산

연도	대상자 (천명)	인당 월평균지원액 (달러)	총 지원액(①) (백만 달러)	관련비용(②) (백만 달러)	총 비용(①+②) (백만 달러)
2015	45,767	126.81	69,645.14	4,301.51	73,946.65
2016	44,220	125.40	66,539.27	4,374.28	70,913.55
2017	42,228	125.73	63,711.05	4,463.50	68,174.55
2018	39,431	124.68	58,996.50	4,528.08	63,524.58
2019	34,474	129.96	53,761.25	4,516.11	58,277.37

주 1) 관련비용: 이 표는 결산/비용 관련 수치로 연방정부 비용은 포함되었으나 주정부 비용은 불포함

<sup>2) 2018-19</sup>년은 노스캐롤라이나 데이터 missing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pd/overview), keydata report

#### O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시 지원

- ①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2,250달러까지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며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구에 있는 경우에는 3,250달러까지 허용한도가 늘어남. SSI(생활보조금)나 TANF(빈곤가정임시지원), 퇴직연금 등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 ② 총소득(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0% 미만), 순소득(SNAP 공제금액을 뺀 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00% 이하)인 가구. 한 가구 내 모든 가구원이 생활보조금이나 빈곤가정임 시지원을 지원받는 수혜자인 경우 자동적으로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의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됨. 소득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총소득조건과 순소득조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것을 뜻하며, 장애인보조금을 받는 가구는 순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됨(순소득 = 총소득-총공제액).
- ③ 1) 일자리 등록, 2) 자발적으로 일을 관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을 것, 3) 일자리가 주어진 경우 고용될 것, 4) 고용/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 등의 근로조건이 있음.
- ④ 이민신분 조건으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거나, 장애인보조금 혜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18세 이하의 아동 등 합법적으로 이민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SNAP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지원금액) 식비 기준금액과 월 소득 30%의 차액만큼을 매월 지원〈표 4-3〉

#### 표 4-3 SNAP 수혜금액 결정 예시

	1인 가족	2	3	4	5	6	7	8	추가 1인당
월 최대 책정액	194불	357	511	649	771	925	1,022	1,169	+146

주: 수익의 30%를 식비로 지출한다고 가정

- (식품구입처) '11년 기준 231,000개 매장참여(요건 충족 시 참여가능)
  - 주식류(빵·곡류, 우유·유제품, 과일·채소, 육류·생선·가금류) 지속 판매 또는 매출의 50% 이상을 주식류가 차지〈표 4-4〉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snap/fact-sheet-resources-income-and-benefits: 2017.12.12.); 이계임·김상효·김부영(재인용). 2017. p. 122.

표 4-4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의 구매 가능 식품

구 분	식품
구매 가능	* 가정에서 소비하기 위한 일체의 식품 - 비알코올음료, 스낵, 탄산음료, 사탕류 및 얼음, 그리고 네 가지 기본식품군[빵/곡류, 우유 및 유제품, 과일 및 채소류, 육류 및 생선, 가금류]) - 식용으로 재배되는 씨앗 및 식물
구매 불가	* 맥주, 포도주, 주류 또는 담배류 * 판매 시점에 이미 조리된 음식 * 업소매장 내에서 먹는 음식 * 비타민 또는 의약품 * 애완동물 먹이 * 티슈, 비누, 화장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같은 비식품류

자료: 이계임 외(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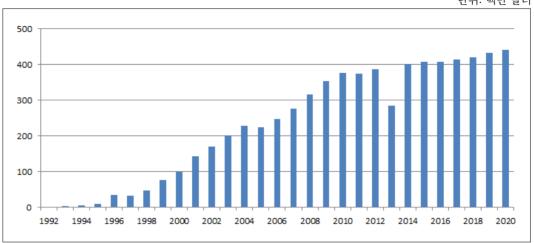
- O (모니터링) '16년 11월 수혜자들의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이 처음 보고
  - 탄산음료 등의 지출비중이 크게 나타나 품목제한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경제효과) 농식품 수요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미국 ERS 분석 결과, 1달러의 식품지원을 통해 1.79달러의 경제효과 파생('10)

# 3.1.2. SNAP-Ed: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Education

- O (현황) '92년 7.6억 원으로 시작하여 연평균 28.2%씩 꾸준히 증가, '20년 4,983억 원
  - 연방정부와 주정부 예산 매칭비율이 1:1이므로 교육 예산 총액은 1조원에 가까움<그 림 4-2〉.

#### 그림 4-2 연도별 SNAP-Ed 예산(FY1992-FY2020)

단위: 백만 달러



주: FY 2020 예산은 추정치임.

자료: USDA/FNS(https://snaped.fns.usda.gov/program-administration/funding-allocations 2019.08.16. 방문).

- (추진체계) USDA의 식품영양서비스국이 SNAP-Ed 교육프로그램을 총괄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각 주(state)별로 각 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주정부 내 교육담당 부서가 총괄하고 주 내의 주립대학 및 민간기관들이 교육을 진행하는 구조임.
  - SNAP-Ed는 주 별로 다른 명칭을 갖기도 함. 예를 들면, 버지니아 주의 경우 Virginia Family Nutrition Program으로 불리고 있음.
- O (지원대상) SNAP-Ed의 대상자는 SNAP 참여가구와 SNAP 참여가구와 비슷한 저소득 층임.
  - SNAP 참여가구, 기타 저소득층 보조 프로그램 참여 가구, 일반 저소득층을 포함함.
  -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SNAP 담당 기관은 SNAP-Ed에 대해 홍보하여 저소 득층이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함.

- 3.2. 여성·영유아·아동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WIC) 및 WIC 파머스마켓 영양프로그램 (WIC-FMNP)
- 3.2.1.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여성·영유아·아동 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
- (도입) 1972년 모유 수유 여성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후, 1975년 제도화(모 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까지 확대)
- O (추진체계) SNAP의 경우와 유사(FNS), 연방정부가 WIC 참여자들이 거주하는 주 (States)에 자금을 지원
- (결산/비용 기준) '19년 51.8억 달러(약 6조 2천억 원)〈표 4-5〉

표 4-5 WIC 연도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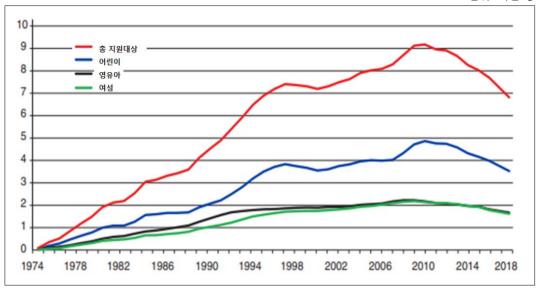
연도	대상자 (천 명)	인당 월평균지원액 (달러)	총 지원액(①) (백만 달러)	관련비용(②) (백만 달러)	총 비용(①+②) (백만 달러)
2015	8,024	43.37	4,176.0	2,063.9	6,239.9
2016	7,696	42.77	3,949.6	2,070.8	6,020.4
2017	7,286	41.24	3,606.1	2,089.9	5,696.0
2018	6,870	40.96	3,376.6	2,068.6	5,445.2
2019	6,400	40.92	3,142.3	2,041.9	5,184.2

주 1) 관련비용: 주 행정비용, 영양 서비스 및 관리 (NSA) 보조금, 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 등 2) 2019년은 확정 수치 아님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pd/overview), keydata report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85%보다 낮은 임산·수유부, 수유하고 있지 않은 출산부, 5세 이하 영·유아
  - 전체 참가자 중 아동의 비중은 절반(51%)을 차지했고, 영유아는 25%, 여성은 24%의 비중을 각각 차지함.
  - WIC에 지원을 받은 여성, 영유아, 아동은 각각 전년보다 4-6% 감소했는데, 여성, 영유아, 아동 세 그룹 모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은 9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4-3〉.

단위: 백만 명



자료: Oliveira, Victor(2019).

- (식품지원) WIC에서 지원하는 식품은 저소득 임산부, 출산모, 영아, 5세 이하 유아의 영양 필요를 고려하여 패키지별 다양한 구성
  - 주스, 우유, 씨리얼, 치즈, 달걀, 과일, 채소, 통곡물 빵, (통조림)생선, (건조/통조림) 콩·피넛버터, 분유(영아의 경우)
- O (식품구입처) '20년 현재 기준 157,450개 매장참여(요건 충족 시 참여가능)
  - 취급 식품류의 가격 및 다양성, 취급량, 사업자의 무결성 등
- (모니터링) WIC 담당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거주지 증명, 이중수혜), 고위험 벤더 관리, 부정사용 벤더에 영구 배제, 농무부 식품영양국은 연례보고서를 작성
  - 2011회계년도 기준으로 벤더에 잘못 지불된 금액 총액은 5,250만 달러 수준 등

# 3.2.2. WIC-FMNP(WIC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 (현황) 1992년에 WIC 참여자가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지원액은 2019년 209억 원임.
- (추진체계)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파머스 마켓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을 추가로 발급받아 파머스 마켓, 개인 농가,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구매

# 3.3. 어린이영양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s: CNP)

- O CNP는 1)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 2) 학교아침프로그램, 3) 특별우유프로그램, 4) 어린이 /성인 돌봄식품프로그램, 5) 여름식품서비스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됨.
- 한편, "Team Nutrition"이라는 협의체가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FNS)에 구성되어 있으며, 이 협의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돌봄교사들 대상 식사서비스/영양교육에 대한 훈련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과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위한 학교/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CNP의 효과적인 운영을 추진함.
  - 어린이영양 전문가에게 훈련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어린이가 좋아하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 할 수 있도록 도움.
  -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영양 교육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서 건 강한 식품과 신체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동기를 갖도록 도움.
  - 영양가 있는 식품 선택과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는 건강한 학교 및 보육 환경을 지원
- O "Team Nutrition"과 더불어 "지역사회식품시스템"이라는 부서의 지원을 통해 공립학 교점심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CNP 프로그램들의 운영자들이 로컬푸드를 활용하고 연계하도록 하고 있음.

# 3.3.1.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 O (도입) 1946년 트루먼 정부가 학교급식지원법(Richard B. Russel National School Lunch Act)에 따라 제도화 함.
- (추진체계) 미국 USDA의 식품영양서비스국(FNS)에서 연방 범위에서 NSLP 담당, 각 주별 사무처가 실무 담당, 공립학교 또는 비영리사립학교 등 학교 단위로 신청
- O (예산) '19년 141억 달러(약 16조 원)〈표 4-6〉

표 4-6 NSLP 연도별 예산

аг	월평균 참여아동 수(백만 명)			총 지원횟수	무료/급식할인	지원액(백만 달러)			
연도	무료급식	급식할인	전액 납부	전체	(백만회)	(백만회)	비중(%)	현금지원	현물지원
2015	19.8	2.2	8.5	30.5	5,005.4	72.6	11,696	1,307	
2016	20.1	2.0	8.2	30.4	5,052.9	73.3	12,259	1,311	
2017	20.0	2.0	8.0	30.0	4,891.5	73.6	12,251	1,393	
2018	20.1	1.8	7.7	29.6	4,865.7	74.4	12,580	1,243	
2019	20.1	1.7	7.7	29.5	4,854.5	74.1	12,834	1,330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pd/overview), keydata report

- O (지원대상) SNAP참여아동, 노숙아동, 가출아동, 이주아동, Head Start Program 참여 아동 또는 그에 준하는 지원프로그램 참여 아동, 빈곤선의 185% 이하 소득 아동
  -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0% 미만인 학생은 무료급식 지원대상자가 되며, 130 ~185%는 할인급식(끼니 당 40센트 이상의 부담을 지울 수 없음)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금액) 지원유형별로 최소 0.32달러에서 5.54달러까지 매 끼니 급식비 지원〈표 4-7〉

표 4-7 NSLP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지원유형	48개주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전액 납부	끼니 당 \$0.32	끼니 당 \$0.53	끼니 당 \$0.38
급식할인	끼니 당 \$3.01	끼니 당 \$5.14	끼니 당 \$3.60
무료급식	끼니 당 \$3.41	끼니 당 \$5.54	끼니 당 \$4.00

주: 전전년도 무료급식 및 급식할인 비중이 60% 미만인 학교 기준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

O (효과) 수혜아동의 영양섭취량 증가(Gleason and Suitor 2003), 식품안정성 제고, 건 강 및 비만율에 긍정적 효과, 학습에 필요한 영양적 요구 충족(FRAC)

# 3.3.2. 학교아침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 SBP)

- O (도입) '66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75년 영구 프로그램으로 추진
- O (예산) '19년 45억 달러(약 5조 3천억 원)〈표 4-8〉

표 4-8 SBP 예산 사용 현황

МE	월평균 참여아동 수(백만 명)				총 지원횟수	무료/급식할인	지원액
연도	무료급식	급식할인	전액 납부	전체	(백만 회)	비중(%)	(현금, 백만 달러)
2015	11.05	0.90	2.10	14.05	2,334.12	85.2	3,892
2016	11.52	0.86	2.19	14.56	2,448.34	85.1	4,212
2017	11.60	0.84	2.23	14.66	2,412.86	85.0	4,252
2018	11.75	0.77	2.17	14.68	2,422.44	85.4	4,396
2019	11.76	0.74	2.23	14.73	2,441.72	85.0	4,527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

- O (지원대상) SNAP참여아동, 노숙아동, 가출아동, 이주아동, Head Start Program 참여 아동 또는 그에 준하는 지원프로그램 참여 아동, 빈곤선의 185% 이하 소득 아동
  -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0% 미만인 학생은 무료급식 지원대상자가 되며, 130 ~185%는 할인급식(끼니 당 40센트 이상의 부담을 지울 수 없음)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금액) 지원유형별로 최소 0.31달러에서 5.54달러까지 매 끼니 급식비 지원〈표 4-9〉

표 4-9 SBP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지원유형	48개주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전액 납부	끼니 당 \$0.31	끼니 당 \$0.47	끼니 당 \$0.36
급식할인	끼니 당 \$1.90	끼니 당 \$3.23	끼니 당 \$2.27
무료급식	끼니 당 \$2.20	끼니 당 \$3.53	끼니 당 \$2.57

주: 전전년도 무료급식 및 급식할인 비중이 60% 미만인 학교 기준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

# 3.3.3. 특별우유프로그램(Special Milk Program, SMP)

- (추진체계)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USDA-FNS)이 주관하는 특별우유프로그램 은 일반적으로 주정부의 교육부가 학교의 동의를 얻어 관리 및 유영함.
- (지원대상) 연방정부의 다른 아동영양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와 보육시 설이 지원대상임.
  -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이나 학교아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이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우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 지원대상학교가 될 수 있음.
  - 저소득층 학생들은 특별우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의 무료급식 지원대상이 됨.
- (지원품목) 학교는 주정부나 해당지역의 기준을 만족하는 백색시유 혹은 가공우유 (가향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 우유, 발효버터밀크 등)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고, 모든 우유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함유되어야 함.
- (예산) 1960년대 후반에 최고조에 달했던 특별우유프로그램 제공량은 이후 우유를 포함한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과 학교아침프로그램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임. 2019년

기준 79억의 예산으로 3.500만 반잔(Half-Pint)의 우유가 특별우유프로그램에서 지워됨(표 4-10).

표 4-10 연도별 특별우유프로그램 제공량과 지원액

단위: Half-Pint, 백만 달러

연도	총 제공량(Half-Pint)	총 지원액(백만 달러)
2015	47	11
2016	45	9
2017	41	8
2018	38	8
2019	35	7

자료: USDA(2020).

# 3.3.4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CACFP)

- O 어린이/성인돌복식품프로그램은 어린이복지시설, 방과후프로그램, 그리고 성인복지 시설과 같은 보호시설의 아동과 성인,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 O (추진체계) 미국 농무부에 의해 각 주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주로 주정부 교육 기관에서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이 운영됨.
- (지원대상) ① 12세 이하 아동. ② 이민 노동자 가구 내 15세 이하 아동. ③ 18세 이 하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등록된 아동, ④ 긴급 거주지에 거주 하고 있 는 18세 이하 아동. ⑤ 방과 후 보호시설에 등록된 18세 이하 아동. ⑥ 성인 보호 시설에 등록된 성인, 장애인, 노인임.
  - 연방정부 빈곤선 기준의 130% 이하의 저소득가구에게는 보호시설에서 무료로 식 사가 제공되고, 130~185%에 해당하는 가구에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가 제공됨.
  - 보충적영양지원프로그램(SNAP)과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TANF), 인디언보호구역식 품공급프로그램(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FDPIR)

이나 Head Start(또는 Even Start) 프로그램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 아동이나 성인도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음.

○ (예산) 매 끼니당 25센트에서 2.8달러를 지원함. 2019년을 기준으로 하루 450만 명의 어린이와 13만 명의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총 20억 5,000만 끼니의 식사가 제공되었음〈표 4-11〉.

#### 표 4-11 연도별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 식사 제공 수와 지원액

단위: 천명,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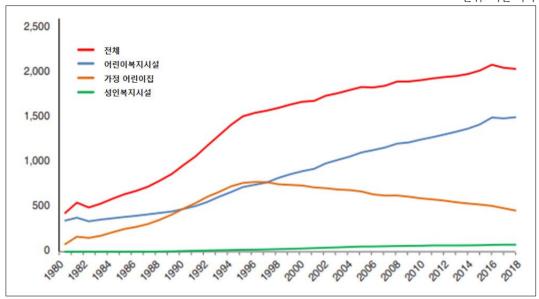
하루 평균			식사 제공 수	(백만)	현금지원	농산물 지원	총 지원액	
연도 수혜자 (천명)	어린이복지시설	가정 어린이집	성인복지시설	전체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2015	4,181	1,419	526	74	2,019	3,009	148	3,307
2016	4,407	1,494	511	77	2,082	3,217	155	3,518
2017	4,530	1,485	485	79	2,049	3,240	151	3,537
2018	4,629	1,504	458	80	2,041	3,322	157	3,623
2019	4,706	1,529	435	82	2,045	3,424	153	3,713

자료: USDA(2020).

- O 2017년부터 식사 제공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2년 연속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음.
  - 제공된 모든 식사 중 어린이복지시설에 제공된 식사는 75%를 차지했고, 가정 어린이 집은 21%, 성인복지시설은 4%를 각각 차지했음〈그림 4-4〉.

그림 4-4 연도별 어린이/성인돌봄식품프로그램 시설별 식사 제공 수

단위: 백만 끼니



자료: Oliveira, Victor(2019).

# 3.3.5. 여름식품서비스프로그램(Summer Food Service Program, SFSP)

- (지원대상) 저소득 지역의 18세 이하 저소득층 아이들(또는 연령 제한 없이 연방빈곤 선 185%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에게 여름방학 동안 식사를 지원함.
- (추진체계)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USDA- FNS)의 프로그램이며, 주정부의 교육부가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주정부의 복지부나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의 지역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 여름식품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구, 농무부 식품영양 서비스국의 지역부, 민간비영리단체 등임.
  - 저소득층을 위해 여름특별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을 개설하는 지역의 학교나 비영리 공공 및 민간단체는 여름식품서비스의 현금이나 현물지원을 통해 어린이들 의 여름방학 기간동안 식사를 지급할 수 있음.
  - 지정된 기관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프로그램에 등록된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지급하는데, 이들 기관에 등록된 아이들의 절반 정도는 무료급식이나 할인급식의 지워대상자에 속해야 한.

- 캠프도 이 여름식품서비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무료나 할인 급식의대상이 되는 아이들만 지원대상이 됨.
- O 2016년을 기준으로 4만 8,000개소에서 하루 2,7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혜택 이 제공되었음.

# 3.4.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FFVP)

- (도입) 2002년 농장안보 및 농촌투자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에 따라 인디아나 주, 오하이오 주, 미시간 주, 아이오와 주, 그리고 뉴멕시 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후 2008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운영됨.
  - 2002-2003년 6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4개 주에 분포한 25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사업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 마무리됨(USDA ERS 2003).
  - 2004년 "S.2507 Child Nutrition and WIC Reauthorization Act of 2004"에 의해 이 지원제도가 영구화되어 개별 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가는 계기가 됨.
  - 2008년 농업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을 통해 미국 전체 주에 걸쳐 프로그램이 시행
- (목적) 어린 학생들에게 새롭고 색다른 품종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소개하는 것이며, 또한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소비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지원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음.
- (추진체계) 미국 USDA의 식품영양서비스국(FNS)에서 연방정부 차워으로 관리하고.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됨.

- (지원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교(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의 무료급식과 할인급 식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의 수가 전체 학생 수의 50% 이상인 초등학교)의 모든 재학생들을 지원대상자로 함.
  - '학교급식법'에 따라 무료와 할인급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신선과일채소프로 그램 지원의 우선순위를 가지도록 함.
  - 지원대상인 초등학교는 학기 중 학생들에게 신선 과일과 신선 채소가 무료로 지급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받음.
  - 신선 과일과 신선 채소는 점심급식이나 아침급식과는 별도로 학교 내에서 제공 될 수 있음.
  - 높은 정부지원 수혜학생비율과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연간 계획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음.

#### O (지원내용)

- 사업용 과일과 채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농산물이어야 하고, 사업 예산으로 구매한 과일과 채소는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영양교육을 위해 Team Nutrition school을 설립하고, 미국 식품영양청(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일과 채소는 신선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함.
- 통조림이나 얼린 형태로 제공할 수 없고, 가공된 제품(과일 피자, 과일 주스 등)을 제공할 수 없음.
- 과일 및 채소는 학생 1인당 용량으로 개별 포장하여 제공하지 않고, Fresh Fruits and Vegetable Program Day를 정하여 다양한 과일을 진열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함.

- O (예산) '20년 1억 9,350만 달러(약 2,322억 원, 1,200원=\$1)〈표 4-12〉
  - 사업비는 연방정부가 90%, 지방정부가 10%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임.
  - 연간 지원예산은 학교당 최대 675,220달러로 저소득 가구의 학생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과일과 채소는 점심 또는 저녁 식사와 별도로 제공해야 함.

표 4-12 2020년 주별 FFVP 할당액

State	Base Amount, based on \$175.5 million available	Estimated Carryover, based on \$18 million available	Total per State allocation based on \$193.5 million available
Alabama	\$3,026,279	\$310,388	\$3,336,667
Alaska	\$1,946,799	\$199,672	\$2,146,471
Arizona	\$3,620,263	\$371,309	\$3,991,572
Arkansas	\$2,538,862	\$260,396	\$2,799,258
California	\$12,043,336	\$1,235,209	\$13,278,548
Colorado	\$3,236,351	\$331,933	\$3,568,284
Connecticut	\$2,684,209	\$275,304	\$2,959,513
Delaware	\$2,006,550	\$205,800	\$2,212,350
District of Columbia	\$1,937,701	\$198,739	\$2,136,440
Florida	\$7,294,712	\$748,176	\$8,042,888
Georgia	\$4,490,995	\$460,615	\$4,951,610
Hawaii	\$2,124,454	\$217,893	\$2,342,347
Idaho	\$2,211,249	\$226,795	\$2,438,044
Illinois	\$5,068,810	\$519,878	\$5,588,688
Indiana	\$3,495,481	\$358,511	\$3,853,992
lowa	\$2,575,877	\$264,193	\$2,840,070
Kansas	\$2,512,249	\$257,667	\$2,769,916
Kentucky	\$2,917,180	\$299,198	\$3,216,378
Louisiana	\$2,967,007	\$304,308	\$3,271,315
Maine	\$2,103,104	\$215,703	\$2,318,807
Maryland	\$3,326,642	\$341,194	\$3,667,836
Massachusetts	\$3,550,170	\$364,120	\$3,914,290
Michigan	\$4,354,823	\$446,649	\$4,801,472
Minnesota	\$3,214,404	\$329,682	\$3,544,086
Mississippi	\$2,531,762	\$259,668	\$2,791,430
Missouri	\$3,348,420	\$343,428	\$3,691,848
Montana	\$2,031,293	\$208,338	\$2,239,631
Nebraska	\$2,256,781	\$231,465	\$2,488,246

State	Base Amount, based on \$175.5 million available	Estimated Carryover, based on \$18 million available	Total per State allocation based on \$193,5 million available
Nevada	\$2,544,211	\$260,945	\$2,805,156
New Hampshire	\$2,107,799	\$216,185	\$2,323,984
New Jersey	\$4,072,004	\$417,641	\$4,489,645
New Mexico	\$2,299,997	\$235,897	\$2,535,894
New York	\$6,837,706	\$701,303	\$7,539,009
North Carolina	\$4,455,661	\$456,991	\$4,912,652
North Dakota	\$1,952,687	\$200,276	\$2,152,963
Ohio	\$4,795,291	\$491,825	\$5,287,116
Oklahoma	\$2,780,550	\$285,185	\$3,065,735
Oregon	\$2,844,957	\$291,790	\$3,136,747
Pennsylvania	\$5,085,970	\$521,638	\$5,607,608
Rhode Island	\$2,029,996	\$208,205	\$2,238,201
South Carolina	\$3,077,323	\$315,623	\$3,392,946
South Dakota	\$1,984,459	\$203,534	\$2,187,993
Tennessee	\$3,515,802	\$360,595	\$3,876,397
Texas	\$9,220,023	\$945,643	\$10,165,666
Utah	\$2,577,167	\$264,325	\$2,841,492
Vermont	\$1,917,893	\$196,707	\$2,114,600
Virginia	\$3,970,353	\$407,216	\$4,377,569
Washington	\$3,714,921	\$381,018	\$4,095,939
West Virginia	\$2,224,676	\$228,172	\$2,452,848
Wisconsin	\$3,267,043	\$335,081	\$3,602,124
Wyoming	\$1,905,263	\$195,412	\$2,100,675
Puerto Rico	\$831,023	\$85,233	\$916,256
Guam	\$43,636	\$4,475	\$48,111
Virgin Islands	\$27,826	\$2,854	\$30,677
TOTAL	\$175,500,000	\$18,000,000	\$193,500,000

자료: USDA(2020).

# O 사업평가 결과

- 사업 지원을 받는 학교 학생의 과일 섭취량이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 학생 의 섭취량 보다 약 33.3% 많게 나타났고, 총에너지 섭취량은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
- 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교의 학생이 받지 않는 학교의 학생보다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음.

- 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교의 과일 및 채소 관련 교육시간이 받지 않는 학교에 비해 29% 길고, 섭취 홍보활동은 약 23% 증가함.
- 에너지 소비량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학생이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에 비 해 1.2% 높고, 건강 식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Healthy Eating Index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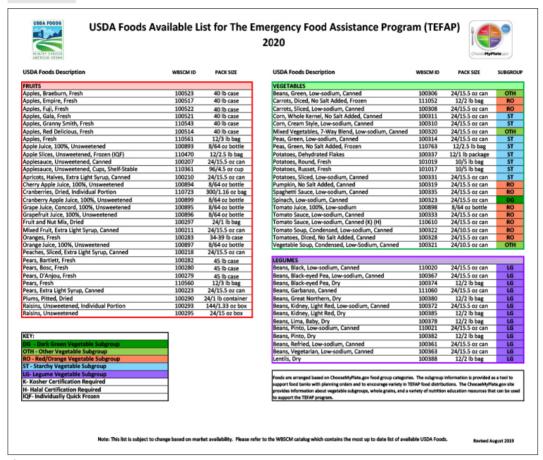
# 3.5.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TEFAP)

- (도입) 1981년 가구에 의한 활용을 통해 농산물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USDA에 의해 구매된 농식품을 분배하기 위해 처음 승인됨.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농식품 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그런데 1988년 농식품 재고가 대부분 고갈되면서 "the Hunger Prevention Act of 1988"는 TEFAP을 위한 USDA Foods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승인함. 이 프로그램은 1990년 농업법에 따라 TEFAP으로 공식 명명됨.
- (목적) 고령자를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프로그램으로 서, 대상자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긴급식품을 제공함.
- (추진체계) 미국 농무부는 영양가가 높고 고품질의 다양한 식품을 구매·가공·포장하여 식품 현물(USDA Foods)을 주정부 분배기관(distribution agency)에 제공할 뿐만 아 니라 행정자금도 제공함. 개별 주가 지원받게 되는 식품의 양은 해당 주 내의 실업자 수 및 소득빈곤선 이하의 개인 수에 의해 결정
  - 주정부 분배기관은 사전에 지정한 지역기관(일반적으로 푸드뱅크)에 식품을 제공하며, 푸드뱅크는 대중에게 직접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soup kitchen, food pantry)나 노숙자 보호소(homeless shelters)에 식품을 배포함.
  - 또한 주정부 분배기관은 식품을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분배하는 지역사회단체에도

- 식품을 제공함. 이러한 지역사회단체들은 가구내 소비나 급식 환경에서 식사를 준비함에 사용할 목적으로 USDA Foods를 수령할 자격이 있는 대상자에게 배포함.
- TEFAP 하에서 주정부는 USDA Foods의 보관 및 분배/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지원받기도 함. 이처럼 주정부에 지원된 예산은 '일부 반드시' 지역기관(local agency)에 전달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O (지원대상) TEFAP이 제공하는 USDA Foods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가정에서 의 사용을 목적으로 식품을 분배하거나, 2) 공공급식을 준비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영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의 비영리 지역기관(nonprofit local agency)임.
  - 1) 가정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식품을 분배하는 기관은 주정부에 의해 결정된 소득기 준을 적용함으로써 가구의 수혜대상(eligibility) 여부를 결정해야 함.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다양한 지원/복지제도에서 사용되는 소득기준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가장 필요한 가구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음.
  - 2) 공공급식을 준비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이 저소득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급식서비스를 제공함을 증명해야 함. 이 공공급식의 수혜자들은 저소득가구로 인정되며 검증을 요구하지는 않음.
- (지원품목) TEFAP을 위해 USDA가 구매하는 식품의 종류는 주별 선호와 농산물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름. 120가지가 넘는 영양가 높은 고품질 제품이 대상 품목이며, 통조림, 냉동/건조/신선한 과일/채소, 계란, 육류, 가금류, 생선, 견과류, 우유 및 치즈, 그리고 쌀, 시리얼, 파스타 등을 포함하는 통곡물류 등을 포함함(그림 4-5).
- O (중복 수혜) TEFAP 수혜자들은 아래와 같은 USDA의 프로그램으로부터도 식품/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NSLP(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WIC(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 FDPIR(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 CSFP(commodity supplemental fod program)

# 그림 4-5 TEFAP에서 활용 가능한 USDA Foods(2020년 기준)



자료: USDA FNS.

O (예산) 2019년 기준 8.467억 원의 예산으로 7억 8.600만 파운드의 농산물이 지원됨 〈丑 4-13〉.

#### 표 4-13 연도별 TEFAP 제공량과 지원액

단위: 백만 파우드, 백만 달러

			- 11	10 10 7 10 0 1
연도	총 제공량	식품 지원액	행정 자금	총 지원액
2015	671	451	74	525
2016	811	586	77	663
2017	824	578	82	660
2018	674	540	90	630
2019	786	621	128	749

주 1)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97.1백만 달러의 예산이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이중 317.5백만 달러는 식품구입용 예산이며, 나머지 79.63백만 달러는 주정부 및 지역기관의 행정지원금임. 승인된 예산으로 구매하는 USDA Foods 이 외에도 농산물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USDA에 의해 구매되는 'bonus foods' 또한 분배되는데,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는 403.2백만 달러에 달함.

자료: USDA-FNS(https://www.fns.usda.gov/)

#### 3.6. 농무부 기타 프로그램

# 3.6.1. 지역식품프로젝트(Community Food Projects, CFP)

- O 지역식품프로젝트는 미국 농무부 산하 국립식량농업원(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이 운영하는 자금지원 식품지원프로그램임.
- (지원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식품지원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는 지역식품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100% 매칭이 필수임).
- O 2019년의 예산규모는 약 57억 원으로 책정되었음.

# 3.6.2. 농산물보충식품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

○ 농산물보충식품프로그램은 연방빈곤선 130% 이하의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미 농무부가 주정부에게 식품과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정부의 식품지원프로그램임.

<sup>2) \$1 = 1,130</sup>원 기준

- (지원대상) 아동, 6세 이하의 영유아, 저소득층의 임산부나 모유수유 여성,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었지만, 2014년 2월 7일 이후 여성·영유아·아동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 (추진체계) 각 주정부의 보건, 사회서비스, 교육, 그리고 농림부서가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식품을 저장하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지역 기관에 식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역 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식품을 지급하고 영양 관련 교육 도 제공함.
  - 농산물보충식품프로그램의 지원대상자는 식품을 직접 지급받는데, 이는 완전한 식 사 형태가 아니고 식사에서 주로 부족한 영양소의 급원 식품 형태임.

# 3.6.3. 고령자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SFMNP)

- O(도입) 2002년 농업법에 의해 파머스마켓, 노점상, 지역사회 지원 관련 농업 프로그램은 과일, 채소, 꿀, 허브와 같은 식품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저소득 고령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고령자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SFMNP) 기금을 마련하였음.
- (추진체계) 주정부 기관은 연방정부로부터 고령자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음.
  - 재원의 대부분은 고령자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식품의 비용지원 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주정부기관은 재원 중 10%를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사 용할 수 있음.
  - 쿠폰은 고령자들을 위한 단체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지원혜택은 주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연방정부 빈곤선 기준의 185% 이하 가구소득을 가지는 60세 이상 고 령자이며, 재정의 한계로 인해 일반적으로 선착순이나 지원자 중에서 무작위로 쿠 폰이제공됨.
- 2015년을 기준으로 43개 주 80만 명에게 월평균 32달러 상당의 쿠폰이 무상으로 지급되었음.

#### 3.6.4.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 FTS)

- (도입)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1996/1997년 시범프로그램으로 시작된 농장학 교연결프로그램은 2000년 농무부로부터 프로그램의 개발을 공식적으로 지원받았고. 2004년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은 국립프로그램으로 법안에 명시되었음.
  - 2015년부터 「Farm to School Act of 2015」에서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의 확대가 승인되었음.
-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은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의 커뮤니티식품시스템청 (Office of Community Food Systems)이 운영하는 식품지원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이나 채소, 계란, 꿀, 육류나 콩 등 신선 농식품을 학교에서 구매할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함.
- 지역의 농식품 생산 농가는 안정적인 시장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들에 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16년을 기준으로 39개 주 74개 프로젝트에 대해 500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미국의 학교 중 42%인 4만 2,587개의 학교가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360만 명의 학생들에게 지역산 농산물이 제공되었음.

#### 3.7. 고령자법 관련 프로그램

○ 「고령자법」에 근거한 식품지원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식사 형태로 식품을 지원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노인청이 주관하나 농무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16)

#### 3.7.1. 집단영양프로그램(Congregate Nutrition Program, CNP)

- O (도입) 1972년 미국 고령자법에 추가되면서 제도화 됨.
  - 사회참여, 건강증진활동, 영양교육, 영양상담, 자원봉사 등 지원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에 기여함.
- (추진체계) 영양서비스자금을 할당받은 주정부 기관은 각 지역에서 집단영양프로그 램을 관리하는 지역별 노인기관(Area Agencies on Aging, AAA)에 이를 제공함.
  - 각 기관별 60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비율에 근거하여 주별로 할당됨.
  - 집단영양서비스 제공자는 지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 한 끼 이상, 주당 5일 이상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제공되는 식사는 보건복지부와 농무부 장관이 정한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가이드라인(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하루 제공되는 식사 끼니 수를 기준으로 식사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함.
- (지원대상) 60세 이상 고령자와 그 배우자(연령제한 없음)이며, 이 외에도 ① 단체급 식이 제공되는 노인용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60세 미만 장애인, ② 노인과 함께 거주 하며노인과 급식 장소에 동행하는 장애인, ③ 급식지급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 O (예산) 2017년 기준 7.620만 끼니의 식사가 1.500만 명의 고령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됨.

<sup>16)</sup> 황지윤·심재은·김기랑(2014) 참조.

#### 3.7.2. 가정배달영양프로그램(Home Delivered Nutrition Program, HDNP)

- O (도입) 1978년부터 운영됨.
- (지원대상) 60세 이상 재가 노인과 그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재가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60세 미만 장애인
- (추진체계) 영양서비스자금을 할당받은 주정부 기관은 각 지역에서 가정배달영양프 로그램을 관리하는 지역별 노인기관에 이를 제공함.
  - 노인 복지관과 노인 센터를 포함하여 지역 센터, 학교, 교회, 성인보호센터 등 집단영양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됨.
  - 기관 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황) 가정배달식사의 비율은 1990년에 42%에서 2010년에 60%로 증가하였는데,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7년에는 1억 4,400만 끼니의 식사가 86만 명에게 제공되었음.

#### 3.7.3. 영양서비스인센티브프로그램(Nutrition Services Incentive Program, NSIP)

- 영양서비스인센티브프로그램은 단체급식이나 가정식배달 서비스를 관리 및 운영하는 미국의 각 주, 미국 영토, 인디안 보호구역의 단체에서 농무부 농식품을 구입하길 원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임.
- 영양서비스인센티브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대부분 현물 지원보다 현금 지원을 더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음.
- O 2017년도에 영양서비스인센티브프로그램은 6개 주와 5개 부족의 농산물 제공을 위해 28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였음.

# 3.7.4.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Grants to Native Americans: Supportive and Nutrition Services, GNASNS)

-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는 미국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노인들에게 영양 관련 식사나 식사배달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미국은 60세 이상의 약 94만 명의 노인들이 미국 원주민이나 알래스카 원주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는 성인돌봄, 가정식배달, 집안일, 교통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고령의 미국 원주민에게 지원함.
- 미국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거주관리청은 미국 원주민 노인들 중 43%가 단체급식 프로 그램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드는 요양원비와 병원치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미국 원주민 사회의 문화적 전통에 부응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O 2017년을 기준으로 미국원주민영양서비스는 2,400만 끼니의 식사와 2,500만 끼니의 식사배달서비스를 원주민에게 제공하였음.

#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과제

# 1. 법률 및 제도 기반

#### 1.1. 법률의 미비

- O 농식품바우처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관련되나 구체적인 근거 법률이 없는 상황으로 본사업으로 이행하기에 앞서 법률기반 마련이 필요함.
- O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률 제3조와 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등과 관련이 되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갖춰진 상황은 아님.

#### 1.2. 법률의 분산

○ 개별 지원제도별로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현행 농식품 지원제도는 2개 의 기본법, 20여 개의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등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제도 간 연계가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그림 5-1〉.

-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식품 생산 및 소비, 복지, 영양 등 3대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음(이계임·김상효·김부 영 2017).
- 「국민식생활·영양기본법(잠정)」제정(안): 식품생산, 식품소비, 식생활, 영양, 복지, 건강 지원 유사 법들을 포괄하는 상위법 개념으로 가칭 「국민식생활·영양기본법」을 제정하는 안임. 각 부처의 관련 법률들을 총괄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함. 그러나 현존하는 법률들을 상위법으로서 총괄하게 될 기본법을 신규로 제정할 필요성 문제, 주무부처 설정 문제 등이 예상됨(이계임·김상효·김부영 2017).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식품산업진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양곡관리법 ■ 노인복지법 낙농진흥법 아동복지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늦어업인 삶의 집 영유아보육법 향상 및 농어촌 지역 사회보장사업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발촉진에 관한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 ■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림 5-1 농식품 지원제도 관련 부처 및 법류

자료: 김상효(2019) 국회 토론회 발표자료

#### 1.3. 제도 간 연계 미흡

O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프로그램들의 경우 담당하는 부처가 농림축사식품부, 보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다양함,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 램만 보더라도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친화경농업과, 식량정책과, 축산경영과, 원예경 영과 등 여러 주무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제도 간 연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2. 유사·중복성의 판단<sup>17)</sup>

○ 복수의 서로 다른 재정사업이 사업목표·사업내용·지워대상을 기준으로 2개 이상 유사 한 경우는 유사사업, 복수의 서로 다른 재정사업이 사업내용과 지워대상이 동일한 경우 는 중복사업임〈표 5-1〉, 〈표 5-2〉.

표 5-1 유사·중복성의 판단

구분	대상	내용		
유사	재정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	<ul><li>유사한 목표</li><li>유사한 활동이나 전략</li><li>유사한 수혜자를 대상</li></ul>		
중복	재정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	동일한 활동     동일한 수혜자에게 동일한 서비스 제공		

자료: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sup>17)</sup>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미국 회계감사원(GAO) 개념과 동일

표 5-2 우리나라 식품지원제도

소득	지원방식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고령자	
	현금						
일반	할인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현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기초	생활(식품비)			
	현금		긴복복	지지원(식품비)			
		기저귀조제분유(분유)	·			·	
	할인			양곡(쌀)			
저소득		바우처(농식품)					
시소극		푸드뱅크(농식품)					
	현물		우유급식(우	유)			
	연결		아동급식(식	사)		노인급식(식사)	
		영양플러스(농식품)	·		영양플러스(농식품)		
			건강과일바구니				

자료: 직접 작성

# 2.1. 개별 식품지원제도의 사업목표

○ 재정사업의 유사·중복사업의 판단을 위해 개별 식품지원제도의 사업목표를 아래 표에 정리함〈표 5-3〉.

표 5-3 개별 식품지원제도의 사업목표

담당 부처	지원 제도	사업목표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수준과 건강상태 개선 및 농산물 소비 활성화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미래세대의 건강확보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학생 건강 증진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정부양곡할인	저소득층 쌀 지원 및 정부양곡관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			
	생계급여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긴급생계지원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아동급식지원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			
H거브키브	노인급식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결식 예방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영양플러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 및 저출산 문제 해결			
	건강과일바구니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유도			
	푸드뱅크	저소득층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			

자료: 직접 작성

#### 2.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의 중복성

○ 재정사업의 유사·중복사업의 판단을 위해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을 아래 표에 정리함 〈표 5-4〉, 단, 급여 유형은 유사·중복사업의 판단기준에 포함되지 않음(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5).

표 5-4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다다 비쉬	피이 레드		지원 대상	11011110	그어버린	
담당 부처	지원 제도	지원 제고 소득 구분 기		사업 내용	급여분류	
	농식품바우처	저소득층	가구	과일, 채소, 우유, 계란	바우처	
1 717 11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일반	개인(임산부)	과일, 채소, 우유, 계란, 쌀 등	현물	
농림축산 식품부	학교우유급식	저소득층	개인(학생)	우유	현물	
761	정부양곡할인	저소득층	가구	쌀	현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일반	개인(아동)	과일	현물	
	생계급여	저소득층	가구	현금	현금	
	긴급생계지원	저소득층	가구	현금	현금	
	아동급식지원	저소득층	개인(아동)	급식	현물	
HZHTIH	노인급식지원	저소득층	개인(노인)	급식, 도시락	현물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개인(영유아)	조제분유	현물	
	영양플러스	저소득층	개인(임산부, 영유아)	과일, 채소, 우유, 계란, 쌀 등	현물	
	건강과일바구니	저소득층	개인(아동)	과일	현물	
	푸드뱅크	저소득층	개인	과일, 채소, 우유, 계란, 쌀 등	현물	

자료: 직접 작성

- 유사·중복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농식품바우처와 생계급여,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영 양플러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과 건강과일바구니지원사업이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표 5-5〉.
  - 농식품바우처와 생계급여는 사업목표와 지원대상 측면에서 중복 가능
  -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영양플러스는 사업목표와 사업내용 측면에서 중복 소지가 있음.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과 건강과일바구니지원사업은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이 중복 인 것처럼 판단될 여지가 있음.

표 5-5 유사·중복성 평가

사업목표 중복	지원대상 중복	사업내용 중복
	농식품바우처 - 정부양곡할인	농식품바우처 -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농식품바우처 - 아동급식	농식품바우처 - 생계급여	농식품바우처 - 영양플러스
 농식품바우처 - 노인급식	농식품바우처 - 긴급생계지원	농식품바우처 - 학교우유급식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영양플러스	정부양곡할인 - 생계급여	농식품바우처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 건강과일바구니	정부양곡할인 - 생계급여	농식품바우처 - 건강과일바구니
	학교우유급식 - 건강과일바구니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영양플러스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학교우유급식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정부양곡할인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건강과일바구니
		아동급식 - 노인급식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 영양플러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 건강과일바구니
		학교우유급식 - 영양플러스

자료: 직접 작성

-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와 지원대상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시범사업에서 지원대 상 설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설계의 논리는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식품비 지원 및 물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농식품바우처라는 추가 수단을 통해 보충적으로가 지급해야한다는 것이었음. 지원 대상에 대한 유사·중복성을 고려하기에 앞서 사업 목표를 수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과 중복수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내용 상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들은 현재 예산 부족으로 수혜율이 매우 낮은 상태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과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의 유사·중복성이 있음. 실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건 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통합운영의 검토가 필요함.

-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은 정부의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농식품바우처 통 합운영 방안연구에서 지방자지단체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3. 지원 대상 계층별 총액(상한)의 관점에서 통합 관리 필요(참고: 〈표 5-6〉, 〈그림 5-2〉)

○ 우리나라 식품지원제도별 선정기준과, 소득수준별 수혜 가능한 식품지원제도의 개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층별 수혜 총액(상한) 관리의 관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함. 이는 식 품지원제도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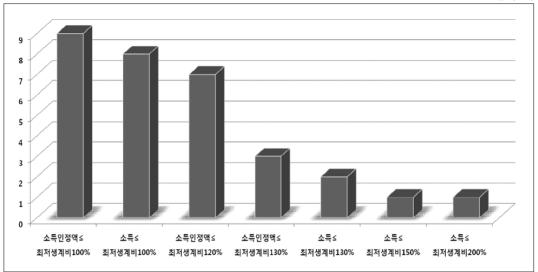
표 5-6 식품관련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00%
기초생활보장양곡할인지원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00%
긴급복지지원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00%, 재산기준, 긴급위기사유
차상위계층양곡할인	최저생계비 100%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수급자) 초중고생, (차상위계층) 초등생
노인급식지원사업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기부식품제공사업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결식아동급식지원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합산 적용
저소득 학생 학교급식지원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30%
영양플러스사업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합산 적용 ≤ 최저생계비 200%, 인구·영양위험요인 고려

자료: 이계임 외(2012)

# 그림 5-2 소득수준별 수혜가능한 식품지원제도 개수 분포

단위: 개



자료: 이계임 외(2012)

# 부록 1

## 미국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현황(세부)

#### 참고 1

##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 (SNAP) 및 SNAP-Ed

□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

#### 도입배경

- 대공황으로 인하여 식품 구매여력이 감소한 도시 빈곤층을 지원하고 농산물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939년에 푸드스탬프를 도입함.
- 농산물 공급과잉과 실업 문제가 맞물린 상황에서 실업자의 기본적인 식품구입을 지원 하는데 활용됨.
- 초기에는 오렌지색 스탬프와 파란색 스탬프를 발급하였으며, 오렌지색 스탬프는 모든 식품, 파란색 스탬프는 공급과잉으로 판정된 식품만 구매가 가능함.
-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농산물 공급여력이 떨어지고 실업이 감소하는 등 상황 변화로 중단됨.
-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재도입함.
  - 기존 스탬프 방식에서 쿠폰으로 변경, 지원식품은 가족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가구원 수에 맞추어 지원

#### 지원대상과 조건

- O SNAP의 지원대상은 저소득 가구이며 해당 가구의 적격 여부는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결정됨.
  - 단,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
- O SNAP 적격여부와 지원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모든 종류의 근로소 득,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정부현금보조, 사회보장지원금, 실업급여, 아동 급여 등 이전 소득을 포함함.
- O SNAP 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주로 금융자산에 한정되며 신청 인의 주택과 그 외 자산, 은퇴자금, 대부분의 자가용은 포함되지 않음.
  - 자산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2,250달러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며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구에 있는 경우에는 3,500달러까지 허용한도가 늘어남.
  - 자산 가치 계산에는 주택가격과 SSI(생활보조금), TANF(빈곤가정임시지원), 퇴직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부표 1-1 SNAP 혜택을 받기 위한 총소득 및 순소득 기준

가구원 수	총소득(연방빈곤선 130%)	순소득(연방빈곤선 100%)
1	\$1,316	\$1012
2	\$1,784	\$1,372
3	\$2,252	\$1,732
4	\$2,720	\$2,092
5	\$3,188	\$2,452
6	\$3,656	\$2,812
7	\$4,124	\$3,172
8	\$4,592	\$3,532
가구원 추가 1인당	+\$468	+\$360

자료: USDA-FNS(https://fns-prod.azureedge.net/snap/recipient/eligibility#Who is in a SNAP household?: 2019.6.13.)

- 수혜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조건은 총소득 조건과 순소득 조건 등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소득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됨. 18)
  -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소득의 합계액)이 빈곤선의 130% 미만, 순소득 (총소득에서 공제 적용 후 소득)이 빈곤선의 100% 미만
  - 가구의 소득 수준이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총소득 및 순소득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SNAP 수혜자로 선정되지 아니함.
- 수혜가구는 일자리 등록, 일정시간 이상 근로, 취업기회 수락,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 등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조건을 만족해야 함.
  - 피부양자 없는 성인(Able-bodied Adults Without Dependents: ABAWD)이 지원금을 3개월 이상 수령하기 위해서는 36개월 내 3개월 이상 평균 주당 20시간 이상 급여를 받는 노동을 하거나 사회보장부처에서 운영하는 고용서비스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그 외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거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시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일해야 함.
  - 근로조항을 면제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18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인 사람, 정신 또는 신체 조건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의사의 판정을 받은 사람,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성인 보호자, 임산부, 실업률이 높은 지역 거주자, 기타
-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민자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거나, 장애인보조금 혜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18세 이하의 아동 등 합법적으로 이민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SNAP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음.

#### ■ 가구당 지원금액

O SNAP 프로그램으로부터 취약계층이 수령할 수 있는 식품비 금액은 가구원 수별로 해마다 책정되는 '최대혜택금액(Maximum Allotment: MA)'과 가구의 조정순소득의 차이임.

<sup>18)</sup> 장애인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총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MA는 농무부 '절약식품계획(Thrifty Food Plan: TFP)'에 기초하여 4인 가족을 대 상으로 장바구니 비용을 추계한 후, 가구원이 4인 이하 혹은 이상인 가구들에 대해서 는 '규모의 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별도로 도출함.
- 지원금액 계산은 순소득을 계산하고 계산된 순소득에서 조정순소득을 계산하여 최대지 원금액(Maximum Allotment: MA)에서 조정순소득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조정순소득이란 가구 순소득의 30%(기대 식품비 비율)로 정의됨.

#### O 순소득 계산방법

- ① 총소득에서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30%를 공제
- ② 기본공제 적용
- ③ 부양비 공제
- ④ 고령자 또는 장애가구원 관련 의료비 공제
- ⑤ 초과 거주비(excess shelter cost) 공제
- ⑥ 계산된 순소득이 기준 순소득 이하이면 순소득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

#### 부표 1-2 가구원수별 최대지원금액(MA)

단위: \$

가구원수 지역	1	2	3	4	5	6	7	8	추가 가구원 1인당
미국본토	192	353	505	642	762	914	1,011	1,155	144
괌	283	520	745	946	1,123	1,348	1,490	1,703	213
버진아일랜드	247	454	650	825	980	1,176	1,300	1,485	186
하와이	358	656	940	1,193	1,417	1,701	1,880	2,148	269
알래스카(도시)	232	425	609	773	918	1,102	1,218	1,392	174
알래스카(농촌1)	295	542	776	986	1,171	1,405	1,553	1,775	222
알래스카(농촌2)	360	660	945	1,200	1,425	1,711	1,891	2,161	270

자료: USDA FNS(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snap/COLAMemoFY19.pdf 2019.08.09. 방문).

#### ■ 신청절차 및 참여방법

- 잠재적 참여자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사전 검증시스템 (SNAP Eligibility Pre Screening Tool)을 운영하고 있음.
  - 사전 검증시스템은 가구원수, 자산, 자동차, 소득, 주거비, 부양비, 의료비를 입력하면 대상 가구의 SNAP 적합여부와 예상 수혜금액을 알려줌.
- 신청절차는 신청서 접수-인터뷰-자료 검증의 순으로 이루어짐.
  - 신청서 접수는 현장 접수,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시 또는 카운티)의 사회복지 부서로 신청해야 함.
  - 신청서 접수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함.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가구는 업무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게 됨. 인터뷰는 전화 또는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짐.
  - 인터뷰는 SNAP에 대한 설명, SNAP 지원금 계산방법, 대상 가구의 권한과 책임,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
  - 업무 담당자는 신청서가 처음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음.
  - 결정내용은 승인, 거절 또는 추후 심사 등으로 구분됨.
- 한 번의 신청으로 결정되는 지원기간은 가구별로 다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기간이 끝나면 해당 가구는 재신청해야 함.
  - 단, 모든 가구원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24개월까지 지원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신분증, 거주지역, 사회보장번호 등의 정보와 소득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정부보조, 자녀보조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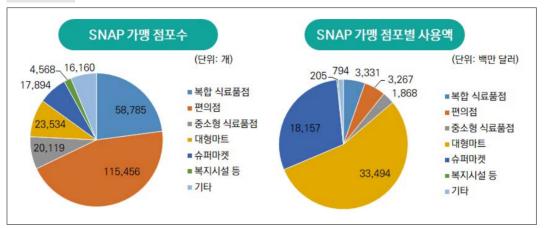
고 있음을 알리는 증서 등 모든 소득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의료비 지출 증빙자료는 병원비 진료영수증, 병원 진찰을 위한 교통비 영수증 등임.
- 또한 신청자는 자산액을 신고해야 함.
- 신고된 자산액이 의심스럽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 신청자는 부양비용, 주거비, 자녀 부양비 등을 신고해야 하며 복지 담당자는 신고내역이 의심스러울 때만 검증을 실시함.

#### 지원품목과 사용처

-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품목은 채소, 과일, 육류, 유제품, 빵, 곡물, 스택류, 비알콜음료, 종자, 채소재배용 화분임.
- 주류, 담배, 비타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살아있는 동물, 즉석섭취식품, 기타 비식용 제품은 바우처로 구매 불가함.
- 해당 품목은 편의점(Convenience Store), 중소형 마트, 대형마트, 베이커리, 채소 및 과일 판매점, 파머스 마켓 등 다양한 판매점에서 바우처를 이용하여 구매가능
  - 2018년 기준 SNAP 가맹 점포는 총 25만 6,516개이며 가맹점포에서 사용된 바우처 금액은 611억 1,635만 달러에 이름.
  - 점포수를 기준으로는 편의점의 비중이 45%, 복합식료품점이 22.9%로 작은 규모의 가맹점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바우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54.8%, 슈퍼마켓이 29.7%로 규모가 큰 식료품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부도 1-1 SNAP 바우처 사용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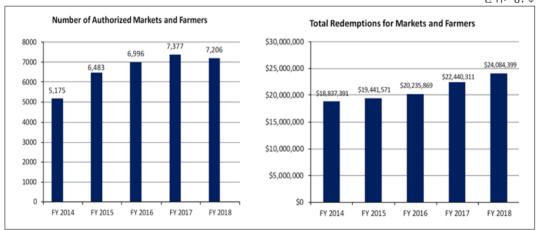


자료: USDA/FNS, Fiscal Year 2018 Year End Summary.

○ 미국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파머스 마켓이나 직거래 농업인에게는 수수료가 없는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파머스마켓이나 농산물 직거래 시장에서 SNAP의 사용실적은 꾸준히 증가함.

부도 1-2 파머스 마켓/직거래 농업인 수 및 바우처 사용액

단위: 명, \$



자료: USDA/FNS, Fiscal Year 2018 Year End Summary.

#### EBT 사용방법

- O EBT 잔액은 영수증에 표시되므로 영수증을 참고하거나 주 별 EBT 관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함.
- O SNAP을 이용할 수 있는 식료품점은 QUEST 로고나 EBT 카드 사진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로고와 사진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O EBT에는 개인비밀번호(PIN)이 설정되어야 하며 물품구매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정 상적으로 결제됨.
- O 개인 EBT 계좌에 남아있는 지원금액은 이월되지만 365일이 이후에는 사용 불가함.
- O EBT 카드가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 EBT 관리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야 함.
  - EBT의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두 개의 회사에서 주별 EBT 관리 홈페이지(www.connectebt.com, www.ebtedge.com)를 운영하고 있음.

Electronic Benefits Transfer for SNAP, WIC, and Cash Payments

To log into your account:

Select Your State Program

Enter User ID

Enter Password

Enter Password

For now infrontation is easy.

Anamass EST
Connectified to your account information is easy.

Py us firely your Password of the ID and for now infrontation abod your brogens

Well two State Region 

To create a new User ID and Password

Indiana EST
I

부도 1-3 SNAP 바우처 사용처 현황

자료: USDA/FNS.

- O SNAP 식료품점에서는 결제시스템 관련 서비스 회사인 Fidelity Information Services, LLC(FIS)와 계약을 맺고 SNAP, 현금 보조프로그램 또는 WIC의 결제와 관련된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받으며 FIS는 USDA로부터 지원금을 인수받아 각 점포에 정산하여 줌.
  - FIS는 EBT를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 프린터, 스캐너, 핀패드 등의 기구들을 제공함.
  - SNAP 식료품점은 결제계좌를 개설하여 FIS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FIS는 해당 계좌로 각 점포에서 SNAP으로 결제한 총 금액에서 제반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1~2일 이내에 정산함.

#### 수혜 현황

- O SNAP 참여율은 FY(Fiscal Year) 2016에 대상 개인 기준 85%, 대상 가구 기준 89%임 (USDA 2018).
  - SNAP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4,700만 명이며 그 중 약 4,000만 명이 참여하였음.
  - 그룹별로는 빈곤선의 51~100%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구원의 95%가 SNAP에 참여 한 반면 빈곤선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는 42%의 참여율을 보였음.
  - 또한 최저 수혜금액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의 참여율은 30%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룹일수록 참여율이 높음.
  - 한편 60세 이상의 고령자 참여율은 45%이며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의 참여율은 59%,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참여율은 25%로 노인 중에서도 취약한 그룹의 참여율이 더 높음.
- O SNAP 참여율은 최근 7년간 눈에 띄게 상승하였음.
  - 전체 개인 참여율은 72%에서 85%로 상승하였으며 가장 참여율이 낮은 노인의 참여율도 33%에서 59%로 상승하였음.

- O 참여율의 증가는 근본적으로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경기불황으로 빈곤층이 된 근로자가 과거에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다 가 복지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SNAP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음(Greenstein et al. 2018).

**부표 1-3** SNAP 참여율(FY2010-FY2016)

단위: %

78	F)/0040	F)/0044	F)/0040	F)/0040	F)/004.4	E)/004E	E)(2010
구분	FY2010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전체 개인	72	78	83	85	83	83	85
가구원수별							
1~2인 가구	65	75	81	84	82	82	81
3~4인 가구	76	82	86	90	86	89	92
5인 이상 가구	74	76	83	80	79	75	81
연령별							
17세 이하	89	96					
18~59세	72	79	85	88	85	86	88
60세 이상	33	38	42	41	42	42	45
 1인 가구	43	50	55	54	56	56	59
 2인 이상 가구	20	23	24	25	23	25	25

자료: USDA-FNS(2018).

- O 또한 SNAP 참여율의 상승 요인에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행정처리를 하려고 한 각 주정부의 노력이 있었음.
  - SNAP 대상가구가 참여를 꺼리는 원인 중 하나가 복잡하고 어려운 신청절차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였음.
  - 예를 들면, SNAP과 자격요건이 비슷한 Medicaid와 SNAP의 신청을 통합한 것이 주 정부의 해결방안 중 하나였음.
- 또한 종이쿠폰 방식에서 EBT로 전환한 것은 수혜자의 낙인효과를 줄임으로써 참여율을 높였음.
  - 이는 많은 가구들이 낙인효과 때문에 SNAP의 참여를 꺼렸다는 것을 반증함.

- 또한 최근 몇 년간 주거비가 급증한 것이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대 상가구의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정리하면, 대상가구의 경제적 상황, 낙인효과,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이 참여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O 최근 5년 SNAP의 총 수혜자는 감소하였음.
  - 월 평균 수혜자 수는 2014년에 4,664만 명에 이르렀으나 2018년에는 3,965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 수혜인원의 감소와 더불어 지원금과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도 감소하였는데 2014년 총 비용은 740억 6.033만 달러였으나 2016년에는 648억 7.511억 원으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126달러 내외에 머무르고 있음.

부표 1-4 SNAP 지원규모 및 비용(2019년 7월 5일 기준)

회계연도	월평균 수혜자 수 (천명)	1인당 평균 지원금 액(달러)	지원금 총액 (백만 달러)	기타 비용2 (백만 달러)	총비용 (백만 달러)
2014	46,664	125.01	69,998.84	4,061.49	74,060.33
2015	45,767	126.81	69,645.14	4,301.51	73,946.64
2016	44,220	125.40	66,539.27	4,367.23	70,906.50
2017	42,133	126.01	63,711.05	4,458.43	68,169.48
2018	39,652	126.96	60,407.79	4,467.32	64,875.11

자료: USDA FNS(https://www.fns.usda.gov/pd/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2019.08.02. 방문).

#### 식품 지원체계

- 기본적으로 수혜자들이 식료품점에 가서 필요한 농식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구매를 시도하고 있음.
  - 아마존, 샵라이트, 월마트의 홈페이지에서 EBT를 이용한 구매가 가능하며 지역적으로는 앨라배마, 아이오와,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뉴욕, 오레건, 워싱턴 주에서 온라인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O 식료품점은 자체적으로 농식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농무부 식품영양국은 SNAP을 위한 조달절차에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음.
- O 다만, 농무부는 SNAP-인증 식품점(SNAP-authorized stores)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
  - SNAP-인증 식품점의 자격 요건은 육류·닭고기·생선류, 빵·씨리얼, 채소·과일, 유제품 등 4개의 농식품군에 대해 3종류 이상의 식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식료품점의 전체 판매액 중 위에서 언급된 4개의 농식품군의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야 함.19
- 추가적으로 농무부는 SNAP 수혜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종류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설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 SNAP으로 구매가 가능한 농식품은 위에서 언급된 4종의 농식품군뿐 아니라 가구에 의해 소비되는 농식품을 생산하는 종자 및 식물도 포함됨.
  - 청량음료, 캔디류, 쿠키류 등도 SNAP 혜택으로 구매 가능한 농식품에 포함됨.
  - 티슈나 샴푸와 같은 비식품류는 SNAP의 혜택으로 구매가 불가능하며, 식료품점 안에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hot foods'). 즉석식품 역시 구입할 수 없음. 20)
  - 또한 주류, 담배류, 영양제 및 의약품, 살아있는 동물 등도 SNAP으로 구입할 수 없음.
- O 미국정부는 지역 내 농산물 생산과 SNAP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파머스 마켓이나 직 거래 농업인이 SNAP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파머스 마켓 운영자 또는 직거래 농업인은 EBT 전용 POS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음(출장 시 확인).
  - 또한 SNAP 사용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 SNAP 카드 소지자에 대한 홍보에 대한 교육 지원을 받음.

<sup>19)</sup> USDA-FNS(a)를 참고하여 작성함.

<sup>&</sup>lt;sup>20)</sup> USDA-FNS(b)을 참고하여 작성함.

#### ■ 지급 및 대상 선정오류 개선21)

- 각 주는 개인 사망기록과 수감자 기록, FNS의 부적격자 데이터베이스를 적격여부 심사에 활용하여 부적격자가 지원을 받는 일을 방지하고 있음.
- 또한 사후관리로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공표함.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각 주의 SNAP 담당부서는 매달 무작위적으로 일부 수혜가구를 뽑아서 전국적으로 총 5만 가구의 샘플을 구성함.
  - 주의 SNAP 담당자는 수혜자의 인터뷰와 가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는 각 주가 대상가구의 적격여부와 지원금액을 얼마나 정확하게 결정하였는가를 판단하는데 활용함.
  - 각 주는 적격여부 판정 및 지급금액 산정의 오류 발생수를 계산하며 이때 과소지급 또 는 과대지급도 오류로 취급함.
  - 과대지급된 지원금은 환급해야 하며 과소지급된 금액은 추가 지급함.
  - USDA는 총 5만 건의 사례 중 약 2만 5000건에 대해 각 주의 검증결과를 재검증하고 각 주의 검증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함. 만약 주에서 이루어진 검증결과가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재검증 결과를 주 정부에 송부하여 주 정부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USDA는 재검증 자료들을 분석하며 전국 및 주별 지급 오류율을 계산하여 매년 6월 에 발표함.

<sup>&</sup>lt;sup>21)</sup> USDA/FNS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2019.8.9. 방문) 〈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media/file/USDA SNAPOC Infographic.pd〉

#### ■ 부정사용의 적발 및 사후조치22)

○ 부정사용은 크게 수혜가구, SNAP 참여 식료품점, 주 정부 SNAP 담당자의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식료품점의 부정사용(trafficking), 수혜가구의 부정사용, 식료품점의 허위 신청, 수혜가구의 허위 신청, 수혜가구나 담당자의 실수, SNAP 담당자의 부정행위 등의 유형으로 구분됨.

#### O 부정사용(Trafficking)

- 식료품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은 USDA가 수혜가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은 주 정부가 담당함.
- 부정사용은 보통 SNAP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식료품점과 수혜가 구 모두 이런 행위에 관련될 수 있음.
- 또한 부정사용은 사용 제한된 품목의 구매에 지원금액을 사용하거나 지원금으로 구매한 품목을 반품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방식, 지원금으로 구매한 품목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을 포함함.
- 수혜가구가 SNAP 지원금을 식료품점에 팔아 현금을 받는 것도 부정사용에 해당됨.

#### ○ 식료품점의 허위 신청

- 식료품점이 SNAP 가맹점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허위신 청으로 간주함.
- 또한 식료품점 주인이 부적격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가족이나 친척에게 소유권을 위장 매도 또는 이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도 허위신청에 해당함.

#### O SNAP 담당자에 의한 부정행위

- SNAP 담당자가 불순한 의도로 부적격 신청자에게 적격판정을 내리거나 지원금 과대

<sup>&</sup>lt;sup>22)</sup> Aussenberg(2018)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지급을 결정하는 행위

- 주 정부의 복지담당 부서가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불법적으로 교부받거나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노력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 O 기타

- SNAP 신청자가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심사과정에서 담당자가 적격 판정 및 지급액 결정에 있어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일종의 부정사용으로 볼 수 있음.
- O USDA는 식료품점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이용함.
  - (EBT 거래 자료 분석)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포착하는 사용함.
  - (잠복 조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식료품점에 잠입하여 조사함.
  - (법률집행협약(State Law Enforcement Bureau Agreement)) 몇몇 주는 동일 관 할권역 내에 있는 사법부와 협약을 맺고 부정행위를 조사하기도 함.
  - (신고 및 제보) USDA-FNS는 신고 및 제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함.
- 수혜가구의 부정행위는 주 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USDA의 부정행위 감시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EBT 거래 자료 분석) USDA가 포착한 의심 사례에 대한 정보를 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수혜가구를 특정함.
  - (온라인 모니터링)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포착함.
  - 잠복 조사
  - (EBT 교체 기록) EBT 카드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수혜가구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됨.
  - (신고 및 제보) USDA-FNS는 신고 및 제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함.

- (데이타 매칭) 신청자료 등 기타 검증자료를 매칭하여 부정행위자를 적발함.
- O 부정행위가 적발된 식료품점은 해당 식료품점의 모든 소유주가 처벌을 받음.
  - 해당 식료품점은 SNAP 인증 식료품점의 자격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동안 SNAP 참여할 수 없음.
  - 또한 해당 식료품점은 WIC 인증 식료품점의 자격도 박탈당함(동일 기간).
  - 부정사용 되었던 지원금을 납부해야 함.
  - USDA-FNS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식료품점의 정보를 공개함.
  - 또한 해당 식료품점의 소유주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과 최 대 2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 부정행위가 적발 수혜가구는 수혜자격을 박탈당하며 해당 가구의 성인 가구원은 과대 지급된 금액 또는 부정유통된 금액을 반납해야 함.
  - 자격 박탈기간은 최소 1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자격 박탈이 될 수 있음.
  - 또한 주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자격 박탈당한 가구의 타 복지프로그램 수혜자격도 박탈할 수 있음.
  - 또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혜가구는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주마다 자율 적으로 결정됨.

#### SNAP 연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의 영양교육은 1992년에 시작되었으며 푸드스탬프가 SNAP으로 바뀐 후 교육프로그램은 SNAP-Ed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되고 있음.
- O SNAP-Ed의 궁극적인 목표는 만성질환 등의 질병 예방 및 감소에 있음.
- O SNAP-Ed의 대상자는 SNAP 참여가구와 SNAP 참여가구와 비슷한 저소득층임.

- SNAP 참여가구, 기타 저소득층 보조 프로그램 참여 가구, 일반 저소득층을 포한함.
- O SNAP-Ed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SNAP 담당 기관은 SNAP-Ed에 대해 홍보 하여 저소득층이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함.
  - SNAP 담당 관청 사무실에 SNAP-Ed 홍보물을 부착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식생활교육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을 포함함.
- O SNAP-E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FY2020의 SNAP-Ed 예산은 4억 4,100만 달 러에 이름.
- O USDA의 식품영양국이 SNAP-Ed 교육프로그램을 총괄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는 각 주(state)별로 각 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주정부 내 교육담당 부서가 총괄하고 주 내의 주립대학 및 민간기관들이 교육을 진행하는 구조임.
  - SNAP-Ed는 주 별로 다른 명칭을 갖기도 함. 예를 들면, 버지니아 주의 경우 Virginia Family Nutrition Program으로 불리고 있음.
- O SNAP-Ed의 주요 교육내용은 건강한 식품 선택, 건강이나 영양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섭취하는 방법, 신체활동 장려 등임.
  - 1) 건강한 식품 선택, 2) 건강한 식품 종류, 3) 식사 계획, 4) 올바른 식품 구입 및 예산 계획 수립, 5) 영양표시 확인과 활용, 6) 식품류별 영양소, 7) 건강·저렴한 조리법, 1~2인을 위한 조리법, 8)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가이드라인, 9) 농식품 지원사업의 종류와 혜택, 10) 식품 안전, 11) 올바른 신체활동 방법 등을 포함함.
- O SNAP-Ed의 교육내용은 USDA/FNS가 제시한 영양 가이드라인(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DGA)과 식품 가이드(MyPlate)에 기초해야 하며 그 외에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Physical Activity Guidelines: PAG), 건강한 사람 2020 플랜, 핵심 영양

메시지 등 FNS가 제시하는 여타 가이드라인도 참고할 수 있음.

- O SNAP-Ed의 교육방식은 1대1 강습 뿐만 아니라 그룹 강의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나 저소득층이 많이 고용된 직장 등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단체를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뿐만 아니라 SNAP-Ed는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음.
- O SNAP-Ed는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음.
- 주 정부는 한 해 동안 수행한 SNAP-Ed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 예산 현황,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보고서는 추후 교육프로그램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사용됨.

# 참고 2

#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TEFAP)

- □ TEFAP(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
- (도입) 1981년 잉여 농식품을 처분하기 위해 USDA의 잉여 농식품 기부 실시 후 1983 년 제도화됨.
- (추진체계) 미국 농업법에 근거하여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영양서비스국(FNS) 에서 담당.
- O (결산 기준) '19년 7억 4,900만 달러(약 8,467억 원)

**부표 1-5** TEFAP 연간 예산

연도	총 지급량 (백만 파운드)	총 식품비용 (백만 불)	총 지원액 (백만 불)
2015	671	451	525
2016	811	586	663
2017	824	578	660
2018	674	540	630
2019	786	621	749

자료: USDA FNS( 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fd\$sum-5.pdf)

- (지원대상) ① 빈곤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공공이나 민간의 비영리 조직, ② 각 주의 소득지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 (지원혜택) 미국 농무부가 식품 현물 또는 행정자금을 주정부 기관에 제공
  - 지원식품: 캔 과일류, 캔 채소류, 육류/가금류/어류, 과일주스, 말린 콩류, 우유, 쌀/시리얼, 파스타류, 수프, 분말계란 믹스류 등 80 가지 품목

# 참고 3

###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FVP)

☐ FFVP(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

#### FFVP 소개

- O FFVP는 다양한 신선 과일/채소를 참여하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건강한 간식의 선택대안으로서 신선 과일/채소를 소개하는 매우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수 단임. 한편, FFVP는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정부나 지방정부와 협력/파트너쉽 관계를 개발할 것을 장려함.
- 건강한 식품선택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FFVP의 목적임.
  - 학생들이 경험하는 과일/채소 다양성을 확대
  - 학생들의 과일/채소 소비를 증대
  - 학생들의 현재/미래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학생들의 식단을 차별화

#### FFVP 역사

- O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법안에 기반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미국 내 4개 주 및 인디안부족조직에게 2002-2003학년도에 신선 과일/채소를 구입할 자금을 제공함.
- O "Children Nutrition and WIC Reauthorization Act of 2004" 법안을 통해 2002 년 진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National School Lunch Act" 산하의 영구적 프로그램으로 확장함. 이 때 4개 주와 2개 인디안부족조직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됨.
- O "The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2006" 법안은 1회성으로 FFVP에 6개 주를 추가하는 데 600만 달러를 승인함.

- O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08" 법안은 FFVP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2008-2009학년도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약 990만 달러를 제공함.
- O "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Farm Bill)" 법안은 전국단위 FFVP를 영구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예산을 크게 늘려 2009회계년도에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제공함.
  -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변화에 따라 매년 예산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1억 5천만 달 러까지 증대할 것을 승인

#### FFVP 행정

- O USDA FNS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FFVP를 관할하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학교점심급식 프로그램(NSLP)을 담당하는 주정부 기관에 의해 운영됨. 주정부는 의회에서 정한 방침을 따라야 함.
- O FFVP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점심급식이나 아침급식과 별도로 신선한 과일/채소를 제공해야 하며, 공식적인 수업일(official school day)에 학교 내 1개 이상의 장소에서 제공하야 함. FFVP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는 학교 내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도록 요구됨.
-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예를 들어, 제공하는 과일/채소의 질감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음.
- [주정부 담당기관의 행정을 위한 FFVP 예산] 법안에서는 행정비용 집행을 위해 주정부 담당기관이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FFVP 예산의 일부를 보유/사용하도록 허용함. 주정 부가 사용하게 될 FFVP 행정예산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주정부가 FFVP 참여 학교/학군 (school district)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FFVP에 대한 업데이트 된 정보의 제공까지 고려함.

- [참여 학교 선택 기준] "National School Lunch Act" 19조에서는 "무료/할인된 등록 금 비중이 높은 학교"에게 가장 높은 FFVP 참여 우선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함. 이를 통해 FFVP의 혜택이 신선한 과일/채소를 정기적으로 소비할 기회가 일반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함.
  - "무료/할인된 등록금 비중이 높은 학교"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정부들은 매년 10월에 보고되는 학교별 정보를 활용
  - 이러한 기준은 하나의 주 안에 있는 모든 학교에게 FFVP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지리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예외 적용될 수 없음.
  - FFVP에 선정되기 위해서 해당 학교는 1) 초등학교여야 하며, 2) 무료/할인된 등록금을 내도록 인정받는 학생 비중이 높아야 하며, 3) NSLP에 참여해야 하며, 4) FFVP 참여를 위해 개별 학교 차원에서 제출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신청에 대한 평가에서 무료/할인된 등록금을 내도록 인정받는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게 되며, 수혜대상이 되는 '고-필요(high need) 학교'는 FFVP에 참여하기위한 신청서를 작성할 모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주정부는 이러한 '고-필요 학교'가 1) 신청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2) 행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3) 다른 어린이영양프로그램의 행정 측면에서 우려 대상이거나, 4) 주정부로부터 이전에 받은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FVP를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저소득 학교에 대한 지원] 주정부는 무료/할인된 등록금을 내도록 인정받는 학생 비중이 높은 초등학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FFVP가 해당 초등학교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무료/할인된 등록금을 내도록 인정받는 학생 비중이 50% 이상인 초등학교를 FFVP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주들의 경우 가장 지원필요성이 높은 초등학교들에만 한정하여 FFVP를 시행할 수 있음.
- [학교에 의한 지원 절차] 주정부 담당기관은 주 내에서 가장 높은 지원필요성을 갖는 초 등학교들에게 지원서를 요청해야 함. FFVP에 참여하는 개별 학교들은 최소한 1) 전체

등록 학생 수와 무료/할인된 가격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생의 비중, 2) 학교급식 서비스 관리자, 교장 및 교육구 교육감 (또는 동등한 직위)에 의한 서명된 FFVP 참여에 대한 지원 확인서, 3) FFVP와 그밖에 건강/영양을 증진하고 과체중/비만을 줄이고,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한 다른 노력들 간의 통합/연계를 위한 실행계획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한편, 개별 학교들은 비연방정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예: 과일/채소 산업계 혹은 커뮤니티 건강증진 담당기관)과의 파트너쉽 개발을 장려 받음.
- 학교에 의한 지원 절차는 주정부 담당기관에 의해 매년 실시되지만 계속되는 수요에 기반하여 자료 업데이트 수준으로 재신청 절차를 대신할 수도 있음.

#### ■ 美농무부가 제공하는 "학교를 위한 핸드북"

- 미 농무부는 FFVP를 진행할 때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된 핸드북을 작성하고 일선 학교에 배포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
- 해당 핸드북은 1) FFVP 소개, 2) FFVP 역사, 3) 프로그램 행정, 4) 작동방법, 5) 수혜 학교 및 대상자, 6) 과일/채소 제공방법, 7) 구입하고 제공해야 하는 과일/채소, 8) 학교가과일/채소를 구입하는 방법, 9) FFVP 내에서 진행될 영양 교육, 10) 비용 지급, 11) 서류작업, 12)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제언, 13) 파트너쉽 형성, 14) FFVP의 식품안전, 15) O&A 등으로 구성됨.

# 참고 4

# 여성·영유아·아동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WIC) 및 WIC 파머스마켓영양프로그램(WIC-FMNP)

□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여성·영유아·아동특별보충영양프로그램)

#### 지원 대상과 조건

- O WIC의 수혜대상은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85%보다 낮은 임산·수유부, 수유하고 있지 않은 출산부, 5세 이하 영·유아임.
  -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은 빈곤선 100%~185%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SNAP, 메디케이드, TANF 또는 각 주의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는 자동으로 WIC 수혜 자격을 얻음.
  - 신청자는 반드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의해 영양 또는 건강 상 위험요인(예를 들면, 빈혈, 저체중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함.
- 지원내용은 보충적 영양 식품, WIC 클리닉에서의 영양교육과 상담, 여타 건강·복지 서비스에 대한 제안, 모유수유 권장임.
- O WIC에서 지원하는 식품은 영양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임산부, 출산모, 영아, 5세 이하 유아의 영양 필요를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며 최대 지원량은 다음의 표 2-11과 표 2-12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영아의 경우 모유수유 여부와 모유수유 비중에 따라서 지원식품 구성이 달라지며 여성의 경우에도 모유수유 여부에 따라서 지원식품이 달라짐.

부표 1-6 WIC 월 최대 식품 지원량(아동, 여성)

	유아	여성		
식품 구분	식품패키지 IV: 1~4년	식품 패키지 V: 임산부, 부분 모유수유 (출산 후 최대 1년)	식품 패키지 VI: 출산 후 최대 6개월	식품패키지 VII: 완전 모유수유
주스	128 액량 온스	144 액량 온스	96 액량 온스	144 액량 온스
우유	16 쿼터	22 쿼터	16 쿼터	24 쿼터
씨리얼	36 온스	36 온스	36 온스	36 온스
치즈	N/A	N/A	N/A	1 파운드
달걀	12구	12구	12구	24구
과일, 채소	8달러 상당 바우처	11달러 상당 바우처	11달러 상당 바우처	11달러 상당 바우처
통곡물 빵	2 파운드	1 파운드	N/A	1 파운드
(통조림) 생선	N/A	N/A	N/A	30 온스
(건조/통조림) 콩, 피넛버터	1 파운드 또는 18 온스	1 파운드 18 온스	1 파운드 또는 18 온스	1 파운드 18 온스

자료: USDA FNS(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wic/SNAPSHOT-of-WIC-Child-Women - Food-Pkgs.pdf 2019.08.13. 방문).

부표 1-7 WIC 월 최대 식품 지원량(영아)

	완전 분유수유(Fully Formula Fed: FF)		부분 모 <del>유수유</del> (BF/FF)		완전 모유수유(BF)	
식품 구분	식품패키지 I-FF & III-FF: A: 0~3개월 B: 4-5개월	식품 패키지 II-FF&III-FF: 6-11개월	식품 패키지 I-BF/FF & III-BF/FF: A: 0-1개월 B: 1-3개월 C: 4-5개월	식품패키지 II-BF/FF & III-BF/FF: 6-11개월	식품패키지 I-BF: 0-5개월	식품패키지 II-BF: 6-11개월
WIC 분유	A: 액상분유 823 액량 온스 B: 액상분유 896 액량 온스	액상분유 630 액량 온스	A: 분유 104 액량온스 B: 액상분유 388 액량 온스 C: 액상분유 460 액량 온스	액상분유 315 액량 온스		
씨리얼		24 온스		24 온스		24 온스
과일 및 채소		128 온스		128 온스		256 온스
육류						77.5 온스

자료: USDA FNS(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wic/SNAPSHOT-of-WIC-Child-Women - Food-Pkgs.pdf 2019.08.13. 방문).

### ■ 지원규모

O WIC의 월평균 참여가구는 FY 2018 기준 총 687만 명 가량이었으며 참여인원은 최근 감소하고 있음. 참여인원 구성으로 보면 유아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으며 영아 인원이 근소하게 여성 참여 인원을 앞서고 있음.

O WIC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식품비와 행정비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식품비는 FY 2018 기준 33억 7,659만 달러, 행정비용은 19억 7,820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참여 인원의 감소와 함께 식품비도 매년 감소하였으나 행정비용은 미미하나마 증가 추세에 있음.

부표 1-8 WIC 월 평균 참여인원 및 운영비용

참여인원 및 비용		FY2015	FY 2016	FY2017	FY 2018
	여성	1,923,171	1,838,293	1,737,991	1,633,864
참여인원(명)	영아	1,939,741	1,875,706	1,787,331	1,712,401
검색한편(평)	유아	4,160,831	3,982,440	3,760,839	3,523,863
	전체	8,023,742	7,696,439	7,286,161	6,870,128
식품비(억 달리	1)	41.7596	39.4957	36.0611	33.7659
행정비용(억 달	<b>날러</b> )	19.2194	19.4612	19.6508	19.7820
1인 평균 식품	비(달러)	43.4	42.8	41.2	41.0

자료: USDA FNS(https://www.fns.usda.gov/pd/wic-program 2019.08.13. 방문).

#### 식품 공급체계

- O WIC 프로그램의 농식품 조달은 SNAP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지만 각 주(state)별로 차이가 크며 WIC 혜택으로 구매 가능한 농식품에 대한 조건이 더 까다로움.
- O 각 주(state)에서 농식품 판매 자격 요건을 갖춘 식료품점을 승인하며, WIC 혜택으로 구매 가능한 농식품의 종류를 선정함.
  - 각 주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연방정부의 '최소영양 기준'을 대체로 따름.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식료품점 차원에서 농식품 조달 및 판매 결정을 내리고 있음 (유아용 분유는 예외).
- WIC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최대한의 수혜자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WIC 혜택으로 구매 가능한 농식품의 조달 비용을 줄일 유인이 존재함. 예를 들어, 주별로 WIC 용도로 조달하게 되는 유아용 분유에 대해 제조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도 함. 리베이트에 대한 보상으로 최종 선정된 제조업체 1개 업체와 물량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특정 주에서는 기타 농식품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시스템을 가동하기도 함.

- O WIC의 조달·판매 절차의 장점은 주정부가 WIC 혜택으로 구입이 가능한 제품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임. WIC 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수혜자들에게 특정 농식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단일 식료품점으로 부터 해당 농식품을 구입하기를 요구하기도 함. 이러한 WIC의 조달·판매절차는 건강하고 저렴한 농식품을 가능한 많은 WIC 수혜자들에게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음.
- O WIC 프로그램에서 농식품 조달 관련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연방정부 예산을 주정부가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임. 주정부가 WIC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비용 부담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조달·지원하게 되는 농식품의 가격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할유인이 존재하지 않음.

#### ■ 부정사용/오용 방지

- O WIC 프로그램이 종이바우처로 운영될 당시 미국에서는 세 집단이 부정사용 혹은 오용에 연루될 수 있었음. 첫째 집단은 식품소매업자(벤더)이며, 둘째는 수혜자(혹은 WIC 참여자), 셋째는 WIC 프로그램 고용인 집단임.
- O WIC 종이바우처로 수혜 받는 식품을 구입할 경우, WIC 폴더(folder)와 WIC 체크 (check; 혹은 voucher)를 계산대 직원에게 제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IC 체크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워터마크, 마이크로라인 프린팅, 형광잉크, 무늬 용지, 컬러 프린팅 등의 수단을 사용함. 위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번갈아 가며 사용함. 컬러의 패턴을 바꾼다던지, 워터마크나 마이크로라인 프린팅의 글자를 바꾼다던지 등의 로테이션 수단이 있음. 발행, 저장, 재고, 주 전담기관명, 사용을 위한 정보 등 체크관리를 은행 수준으로 함. 80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개설하여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며, 이러한 신고 정보를 체크에 인쇄하기도 함. 주별로 체크 위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도 함.

# ■ WIC 참여자 대상 파머스 마켓 영양 프로그램(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도입

- O 의회는 1992년에 WIC 참여자가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파머스 마켓 영양 프로그램을 도입함.
- O WIC 수혜자는 파머스 마켓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을 추가로 발급받아 파머스 마켓, 개인 농가,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구매토록 함.
  - 1인당 매달 평균 23 달러가량의 농산물을 구매하였으며 2018년 기준 총 172만 7234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총 2천 3백만 달러가 소요됨.

부표 1-9 WIC-FMNP 월 평균 참여인원 및 운영비용

구분		2016	2017	2018	
총 지원액(백만 달러)		21	22.3	23	
수혜자(명)		1,650,791	1,739,716	1,727,234	
1인당 지원 수준		\$23	\$23	\$23	
판매자(명/개)	농민	18,225	16,815	16,902	
	마켓	3,236	3,312	2,788	
	가판대	2,433	2,367	2,974	

자료: USDA/FNS, WIC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Profiles.

# 참고 5 특별우유프로그램(SMP)

#### SMP 개요

- 연방정부가 어린이를 위해 추진하는 다른 영양/급식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보 육기관 및 자격이 되는 캠프에서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O 이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기관들의 우유 비용을 제공하는데, 2011년에는 782개 여름 캠 프와 527개 비거주보육시설, 3.848개의 학교/거주보육시설이 참여함. National School Lunch 프로그램이나 School Breakfast Program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SMP 에 참여하여 학교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반나절짜리 유치워이전프로그램이나 유치워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제공할 수도 있음.
-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국이 연방정부 차워에서 SMP를 관리하며, 주정부 차워에서는 학교 식품당국과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교육기관에서 SMP를 관리함.

#### SMP 작동 및 전달체계

- O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공공 혹은 비영리사립학교나 공공 혹은 비영리 거주보육시 설 및 캠프들이 SMP에 참여할 수 있는데. 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 대상 영 양/급식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참여하는 학교들이나 기관들은 농무부로부터 제공된 0.5파인트 단위 우유에 대해서 비 용을 지원받음. 이들 학교/기관들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우유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 며,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모든 어린이들에게 판매되는 우유의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해 야 함.
  -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은 SMP를 통해 우유를 구입하거나 공짜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교가 선택한 프로그램 옵션에 따라 달라짐.

#### 제공받는 우유

○ 참여하는 학교/기관들은 저온 살균 무지방/저지방(1%) 우유만을 제공해야 하며, 이 우유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모든 표준을 충족해야 함. 모든 우유에는 식약처(FDA)에 의해 지정된 비타민 A/D 수준을 포함해야 함.

#### ■ 수혜 대상자(어린이)

○ 지역 학교 관리자가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SMP 하에서 무료 우유를 제공할 때, 공짜식 사에 대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어떤 아이들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음. 각각의 어린이들의 가정은 무료 우유 수혜여부를 매년 점검해야 함.

#### 학교들은 얼마나 많은 지원금을 받는가?

○ 2012-13학년도에 어린이들에게 판매된 0.5파인트 단위 우유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은 19.25센터였음. 우유를 무료로 제공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농무부가 학교들에게 해당 우유의 실제 순구입가격을 지원함.

#### ■ SMP를 통해 1년에 얼마나 많은 우유가 제공되는가?

○ 2011회계년도에 66백만 개의 0.5파인트 단위 우유가 SMP를 통해 제공되었음. 우유제 공이 포함되어 있는 National School Lunch 프로그램이나 School Breakfast Program의 확장은 1960년대 최고점을 찍은 이후 SMP 규모를 확연하게 감소시킴. 1969년에는 30억 개의 0.5파인트 단위의 우유가 제공되었으며, 1980년에는 18억 개, 1990년 181백만 개 수준이었음.

## ■ SMP 프로그램의 비용/예산

○ 2011회계년도에 SMP는 12.3백만 달러를 지출함. 1970년도에는 101.2백만 달러, 1980년도에는 145.2백만 달러, 1990년도에는 19.1백만 달러, 2000년도에는 15.4백만 달러를 지출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부록 2

# 기존 제도와의 관계

####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 1.1.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이미 난임·불임 상태인 부부에게 인공수정 등 진료 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후치료 성격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 사업은 건강한 식품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근본적·예방적 성격
-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원하는 사람이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취약계 층 등에 일괄 지원하는 복지사업과는 큰 차이

부표 2-1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비교

구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목적	O 친환경 단지·지구 등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의 안 정적 소비처를 확보, 친환경농업 활성화 유도 O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저출산 문제에 적 극 대응	o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방법	o 현물(농산물) 지원 * 용도 외 사용 위험이 큰 현금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로컬푸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 제고	o 현금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 등에 한하여 지급
수혜대상	o 산부인과로부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 은 임산부	o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분야 (사업기간, 지원조건)	O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신부에게 광역 생산 단지·지구 등에서 생산한 건강한 친환경농산물(48 만원 상당)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동안 월 2회 공급	o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임신 1회당 진료비 6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부는 100만원, 분만 취약지는 20만원 추가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기타 임산부 대상 지원사업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이 있으나 임신·출산 후 사후관리적 지원임.
  - 목적에 따라 취약계층·저소득층에 한정한 점이 인정되나 환경보전, 균형발전, 출산 율 제고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는 한계가 있음.

부표 2-2 기타 임산부 대상 지원사업 비교

사업명칭	대상	선정 기준	사업 내용	지원 내용(월 단위)	본인부담금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0~12개월)	중위소득 40% 이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기저귀지원 대상 중 산모가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면제(월 지원금 액 소진 시 신용 카드 대금으로 청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 록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소득 수준 무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 급가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 는 진료비용 제공	임신 1회당 120만 원	면제(월 지원금 액 소진 시 신용 카드 대금으로 청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120% 이하	아이 돌봄 지원	영아종일제: 월 31~91만 원 시간제: 시간당 1,625~4,875원	면제(국민행복 카드로 본인 부 담금 자동 결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지원품목,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에 중복<sup>23)</sup> 신청이 우려됨.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영양플러스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보완

<sup>23)</sup>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신·출산부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과 중복

#### 부표 2-3 영양플러스 사업 비교

구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전체 임산부 - 임신부: 임신 기간 10개월 - 출산부: 출산 후 12개월	영아: 생후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6세 미만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품목	친환경농산물	보충식품(일반농산물 위주) ※ 보충식품: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식품
자격요건	소득 및 영양상태 무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만 6세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 진 자
지원기관	도내 시·군·구청	도내 보건소
사업량	전국 326,900명(예상치)	전국 82,045명
지원비율	중앙 40%, 지방비 40%, 자담 20%	- 중위 기준 소득 65% 이하: 국비 100% - 중위 기준 소득 65% 초과 80% 이하: 국비 90%, 자담 10% ※ 4인 기준 중위소득: 65% 2,999천원 / 80% 3,691천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보건소에 신청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단가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단가 없음(식품패키지 현물 공급) ※ 산모 패키지(1인 1일 기준): 감자 50g, 달걀 60g, 당근 35g, 쌀 90g, 우유 200ml, 검정콩 15g, 김 3g, 미역 2.5g
제공방법	산모가 선택하여 품목 구성	미리 구성된 패키지 중 선택
 배송주기	연간 최대 24회(월 2회)	월 1회 제공(매월 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참고문헌

- 김상효·이계임·임소영·허성윤·이욱직. 2019.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이계임·황윤재·이동소·김가영·이윤나·김기랑. 2012.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R680.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 이계임·김상효·김부영. 2017.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R818. 한국농촌경제 역구워.
-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윤·한정훈. 2019.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오민수·조해진. 2019.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김상효. 2019. 국회 토론회 발표자료
- Aussenberg, Randy Alison., Billings, Kara Clifford. 2019. USDA Domestic Food Assistance Programs: FY2019 Appropriations. R4574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Aussenberg, Randy Alison., Colello, Kirsten J. 2019. Domestic Food Assistance: Summary of Programs. R4235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Oliveira, Victor. 2019. The Food Assistance Landscape FY 2018 Annual Report, EIB-207.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2020. Summary of Annual Data, FY 2015-2019. ANNUAL SUMMARY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 PROGRAMS, Data as of January 03, 2020.
-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HHS-ACL). 2020. Fiscal Year 2020 Justification of Estimates for Appropriations Committees.
- USDA-FNS(https://www.fns.usda.gov/pd/overview), keydata report
- USDA-FNS(https://www.fns.usda.gov/snap/fact-sheet-resources-income-and-benefit s)
- USDA-FNS(https://snaped.fns.usda.gov/program-administration/funding-allocations) USDA-FNS(https://www.fns.usda.gov/)
- USDA-FNS, WIC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Profiles.
- USDA- FNS(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wic/SNAPSHOT-of-WIC-Child-Women- Food-Pkgs.pdf)
- USDA-FNS(https://www.fns.usda.gov/pd/wic-program)
- USDA-FNS(https://www.fns.usda.gov/pd/supplemental-nutrition-assistance-program-snap

USDA-FNS( 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fd\$sum-5.pdf) USDA-FNS, Fiscal Year 2018 Year End Summary.

USDA-FNS(https://fns-prod.azureedge.net/sites/default/files/snap/COLAMemoFY19.pdf)

e-나라지표, 아동급식지원 현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http://www.enviagro.go.kr/portal/info/Info\_statistic\_cond.do#a), 친환경인증통계급식뉴스(http://www.newsf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49), 2018.10.29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0 긴급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https://www.foodbank1377.org/New/Index.jsp)

보건복지부,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444/), 2020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6년도 원자료 통합분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3-2018) 영양플러스사업 성과자료집